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2011. 5

이경희

머 리 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누적 적립금이 3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퇴직보험·신탁이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올해부터는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대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산 축적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방안으로서 의무 연금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분 일시금의 허용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지급방식과 상품을 결합해서 연금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연금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퇴직연금 가입자 등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 목차

요 약 / 1

I. 서 론 /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선행연구 / 14

II. 연금전환 정책과 필요성 / 18

1. 연금전환 정책 / 18
2. 우리나라 현황 / 24
3. 연금전환 필요성 / 27

III.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 / 39

1. 연금전환 정책 / 39
2.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 / 41
3. 가격 비교정보 제공 / 45
4. 세계 정책 / 53
5. 연금전환 수준 / 54
6.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 / 57
7. 시사점 / 58

IV. 연금전환 정책설계 / 61

1.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 61
2.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 / 70
3. 시사점 / 87

V.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정책 제안 / 91

1. 기본 방향 / 91
2. 정책 제안 / 100
3.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안 / 102

■ 목차

Ⅵ. 요약 및 결론 / 110

| 참고문헌 | / 113

| 부 록 | / 121

■ 표 차례

- 〈표 II-1〉 의무 연금전환 정책의 장단점 / 20
- 〈표 II-2〉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장단점 / 23
- 〈표 II-3〉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세제 / 27
- 〈표 II-4〉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2008) / 28
- 〈표 II-5〉 우리나라 고령자의 취업의사 / 31
- 〈표 II-6〉 유럽 주요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 비중(2005) / 34
- 〈표 III-1〉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 40
- 〈표 III-2〉 주요국의 지급옵션 규제 / 43
- 〈표 III-3〉 주요국의 연금전환 관련 가격 규제 / 45
- 〈표 III-4〉 SCOMP 활용도 / 47
- 〈표 III-5〉 SCOMP를 통한 연금계약 분포(견적 순위별) / 48
- 〈표 III-6〉 칠레의 MW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 / 49
- 〈표 III-7〉 OMO 활용을 권유하는 정보 제공 / 50
- 〈표 III-8〉 주요국의 연금소득과 일시금에 대한 세제 / 54
- 〈표 III-9〉 주요국의 MW(연생연금) / 58
- 〈표 IV-1〉 경험생명표 작성 기준 비교 / 63
- 〈표 IV-2〉 경험생명표 간 기대여명 비교 / 63
- 〈표 IV-3〉 연금전환 정책과 위험률 가정 / 64
- 〈표 IV-4〉 연금전환 정책과 초과 소비 추정 / 69
- 〈표 IV-5〉 미국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및 GLB 유형별 채택률 / 78
- 〈표 IV-6〉 국내 보험회사의 GLWB 특약 / 81
- 〈표 IV-7〉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의 보험료 규모 / 85
- 〈표 IV-8〉 연금전환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새로운 접근 / 88
- 〈표 IV-9〉 지급옵션 간 상호 비교 / 90
- 〈표 V-1〉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 / 91
- 〈표 V-2〉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 99
- 〈표 V-3〉 각 방안 간 비교 / 100
- 〈표 V-4〉 정보 제공 및 교육 방안 / 106
- 〈표 V-5〉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 109

■ 그림 차례

- 〈그림 II-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급방식 / 25
- 〈그림 II-2〉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2009) / 29
- 〈그림 II-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빈곤율 / 30
- 〈그림 II-4〉 미국 퇴직자의 주요 관심 사항 / 32
- 〈그림 II-5〉 유럽 주요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2006) / 33
- 〈그림 II-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 35
- 〈그림 II-7〉 국민연금기금 재정 추계 / 36
- 〈그림 II-8〉 65세 이상 비중 및 노인부양비율 / 37
- 〈그림 II-9〉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 / 38
- 〈그림 III-1〉 SCOMP 운영 시스템 / 46
- 〈그림 III-2〉 SCOMP 접근 채널별 최저 가격 선택 비율 / 48
- 〈그림 III-3〉 OMO 이용 절차 / 51
- 〈그림 III-4〉 OMO 가격비교 예시 / 52
- 〈그림 III-5〉 주요국의 연금전환 수준 / 56
- 〈그림 III-6〉 연금전환 수준과 MW 간 관계 / 60
- 〈그림 IV-1〉 연금전환 정책과 사망률 가정(55세 남자) / 65
- 〈그림 IV-2〉 연금전환 정책과 생존확률 가정(55세 남자) / 66
- 〈그림 IV-3〉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 67
- 〈그림 IV-4〉 부분 연금전환 방식 / 71
- 〈그림 IV-5〉 전부 연금전환과 점진적 연금전환 비교 / 73
- 〈그림 IV-6〉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의 소득 구성 / 74
- 〈그림 IV-7〉 점진적 연금전환 시 잔여 적립금 추이 / 75
- 〈그림 IV-8〉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 77
- 〈그림 IV-9〉 스텝업과 연금기준금액 갱신 / 80
- 〈그림 IV-10〉 변액연금 GLWB 연금급여 / 82
- 〈그림 IV-11〉 변액연금 GLWB 계약자 적립금 분포 / 83
- 〈그림 IV-12〉 고연령거치연금 구조 / 84

■ 그림 차례

〈그림 IV-13〉 부분 연금전환 정책에 활용 가능한 상품 / 89

〈그림 V-1〉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대체율 구성 / 93

〈그림 V-2〉 제1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 / 96

〈그림 V-3〉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 97

〈그림 V-4〉 혼합전략을 활용한 부분 연금전환 방식 / 102

〈그림 V-5〉 연금전환 시점의 사업자 선택 / 107

Building Policies to Encourage Annuitization in Korean Pension Plans

One of the greatest risks facing retirees is longevity risk i.e., the risk of outliving retirement savings. In corporate pension plans, the way capable of avoiding longevity risk is the annuitization of accumulated savings. Since introducing Korean pension plans in 2005, Korean policy-makers have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expansion of coverage.

However, with increased longevity, the policymakers' focus on enhancing lifetime income is urgently demanding. Many previous studies consider the compulsory annuitization to be an important instrument to prevent poverty in old age. In this study, I suggest key policies for encourage annuitization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dopting the compulsory annuitization with partial lump-sum up to a certain level i.e., 25% or 30%. The remainder must be converted into an income stream at some point after retirement and before the retiree reaches an advanced age. Exception is needed to avoid excess annuity for small savings. Up to the age of compulsory annuitization, the retiree may withdraw income from own account, subject to certain annual limits designed to ensure that the savings do not deplete too quickly. If compulsory annuitization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and then the policy of default annuit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econd best. Another alternative is suggested that tax laws should be changed to give incentive for annuitization. Partial lump-sum may be tax-free, but the remainder should be taxed as a normal income.

Secondly, there are many ways of producing an income and one way (or product) cannot meet all financial needs of retirees. Policymakers should recognize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option for retirement planning. In reality, there is a full spectrum of retirement income options available that range from maximum flexibility to maximum guaranteed income. Therefore, these solutions could be used in payout options and combination strategies could be more attractive.

Thirdly, Korean government should issue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payout phas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use model disclosure for retirement income projections. A lifetime stream of income payments should be expressed on the benefit statement.

Fourthly, the transparency of annuitization market is important issue to ensure that individuals get the best price under the compulsory annuitization policy. This paper suggests building centralized information and quotation systems for annuity products to help an individual select an appropriate product at the competitive price.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간 중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와 퇴직 후 축적된 자산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급 단계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태임.
 -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오랜 관행과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일시금에 대한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퇴직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 일시금 수령이 일반화되면 퇴직연금제도는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함.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이를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의무화 방안과 디폴트옵션 방안에 대해 고찰함.
 - 다음으로 주요국(칠레, 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건에서 상이한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효과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추정함.
 - 마지막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금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안함.

II. 연금전환 정책과 필요성

1. 연금전환 정책

- 정부(또는 연금기금위원회)가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연금전환을 의무화하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있으며 각각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적립금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전환이 대원칙이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전가가 가능함.
 - 연금전환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배제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어 높은 가격경쟁력 유지되는 장점이 존재함.
 - 반면, 개인의 선택권 제한,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유연성 저하 등 단점도 존재함.
 -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에서는 연금전환을 기본 값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연금전환이 적용됨.
 -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단계에서는 디폴트옵션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 정책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세제 측면에서도 연금전환보다는 일시금 선택이 더 유리한 상황임.
 - 퇴직 시점에서 가입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전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함.

-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 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하므로 연금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부재함.
 -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함으로써 실효세율이 매우 낮는데 비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함.
-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노후소득원 중 연금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
 -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적 이전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 소득 확보가 필요함.
 - 노후소득원 중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인데 비해 연금 소득은 14.7%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3. 연금전환 필요성

- 1층인 국민연금제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불안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도 노후소득원으로서 상당히 불충분하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함.
 - 2007년 큰 폭의 급여 인하 조치로 인해 30년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의 30%에 불과한 상황임.
 - 급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2045년 경 적자 발생, 2060년 경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기금 고갈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23.9% 수준으로 급증이 예상됨.

Ⅲ.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

1. 연금전환 정책

- 주요국에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칠레, 영국)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스위스, 미국 DB)을 활용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반면, 미국 DC 및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정부 정책이 없고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방식임.

2.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

- 각국은 연금전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부분 일시금 허용, 프로그램인출 방식 허용, 기혼자에 대한 연생연금 적용 등 구체적인 지급옵션을 규제하고 있음.
 -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 대체한 칠레에서는 부분 일시금을 허용하지 않고, 종신형연금과 연생연금만 허용하는 등 엄격히 규제함.
 - 공적연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적립금의 25%까지 일시금을 허용하며 의무적인 연금전환 연령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인출 방식의 활용도 허용됨.
 -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스위스에는 부분(전부) 일시금이 허용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전환 시 가격 규제를 하지 않지만, 스위스에서는 의무 부문에 대해 국가에서 높은 연금지급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 부문과 이를 초과하는 부문으로 구분한 후 의무 부문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률을 7.2% 수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연금전환 유인을 제공함.

3. 가격 비교정보 제공

-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칠레와 영국에서는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칠레에서는 SCOMP 시스템을 통해 연금전환 관련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동 제도 도입 이후 연금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증대됨.
 - 영국에서는 OMO 활용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들의 연금전환 관련 이해력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4. 세제 정책

-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한 과세 체계 (EET)를 적용하고 있어 과표 상 누진세 대상에 속하는 일시금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일시금 허용 한도인 25%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EET에 비해 좀 더 관대한 EEt 방식임.

5. 연금전환 수준

- 연금전환 수준은 각국의 정책, 지급옵션에 대한 규제, 가격 규제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의무화 정책, 유리한 연금전환 조건 등이 수반되면 연금전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칠레, 영국에서는 연금전환 대상이 되는 적립금 100%가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함.
 -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스위스에서는 연금지급률을 7.2%로 높게 제시하는데 힘입어 전체 적립금 중 80%가 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비해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미국 DC, 호주에서는 연금전환 수준이 10%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6.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

- 가입자 입장에서 연금전환 시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는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는 연금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힘입어 스위스가 가장 높고,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칠레와 영국이 높은 수준임.

IV. 연금전환 정책 설계

1.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 연금전환 정책에 따라 위험단체가 달리 형성될 것이므로 연금전환 시 가격 경쟁력도 달라질 것임.
 - 현재와 같이 자발적 연금전환 시 제6회 개인연금사망률을 가진 위험단체가 형성될 것임.
 -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사업장 종사자들이 연금을 구입하므로 생존·사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위험률 즉, 제6회 생존·사망률을 가진 위험단체가 형성된다고 가정함.
-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위험분산이 잘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형성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어 연금지급률이 상당 수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
 - 남자 55세 0.46%p, 60세 0.60%p, 65세 0.81%p 높아지며 연금급여는 각각 7.6%, 9.4%, 11.8%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

- 연금전환으로 인한 초과 소비(연금지급률-국고채수익률) 크기도 의무 연금 전환정책을 시행하면 자발적 연금전환보다 0.46%p(55세 남자 기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연령이 60세, 65세로 높아지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의 초과 소비 개선 크기도 각각 0.60%p, 0.81%p로 높아져 고연령에서 의무 연금전환 시 높은 소비 수준이 가능함.
-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시행 시 효과는 자발적 연금전환보다는 높지만 의무 연금전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2.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

- 연금전환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연금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분 연금전환 방식, 변액연금의 최저 중신중도인출금보증 특약, 고연령 거치연금 등 전통형 연금상품이 갖고 있는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옵션 활용이 필요함.
- 부분 연금전환 방식은 적립금 전체를 일시에 연금전환하는 것보다 금리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가입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주어 전부 전환에 따른 비가역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음.
 - 예를 들면, 적립금으로 5회에 걸쳐 일시납 즉시연금을 구입하고, 잔여 적립금은 개인 계정에서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함.
 -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연금전환 여부 결정하는 등 유연성이 증대됨.

-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특약은 뮤추얼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보장 기능을 부가하였기 때문에 초과 수익과 하방리스크 보장이라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
 - 투자 성과가 저조해서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증수수료를 납부한 대가로 사망 시점까지 일정 급여 인출이 가능함.
- 고연령거치연금은 고연령에서 개시되는 장기 거치연금계약으로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장수리스크 전가가 가능하며, 잔여 적립금은 연금개시 전까지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음.
 - 일시에 대규모 적립금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고 연금개시 전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함.

3. 시사점

- 개별 지급옵션은 투자수익률, 단순성, 수수료, 위험회피도 및 상속욕구 등 간 다양한 요인을 감안할 때 절대적 우위를 식별하기 어려움.
 - 개인이 지급옵션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함.

V.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연금전환을 유도하면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이 최대 42%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임(1층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25% + 2층 퇴직연금 17%).

- 정부에서 연금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1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을 제안함.

■ 제1안으로 제시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연금전환의 대원칙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에게는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하고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함.
- 예외 조치로서 적립금 수준이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기대여명이 짧은 사람은 적용을 배제함.
- 전환 시기는 55~75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특정 연령 도달 시점까지는 재량적인 투자 허용하고 고연령(예: 70세, 75세, 80세)에 도달 시 잔여 적립금으로 연금을 구입함.

■ 제2안으로 제시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개인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반발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 도입이 어려울 경우 차선택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 효과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보다는 낮지만 현재와 같이 자발성에 일임할 경우보다는 개선될 것임.
-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장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적용함.
- 만약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 도입을 고려함.

- 제3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되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정책임.
 - 의무화 또는 디폴트옵션과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방식에서 세제만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 적용하여 일시금 수급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축소함.
 -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예: 비과세 확대, 면세, 매칭 펀드 등)을 부여함.

VI. 요약 및 결론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연금 전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시행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일시금 허용 한도, 연금전환 연령, 예외 조치 요건, 개인들의 구체적인 선택 행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간 중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accumulation phase)와 퇴직 후 축적된 자산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단계(payout phase)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및 가입자의 관심이 주로 자산축적 단계에 집중되어 연금전환(annuitization)¹⁾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명시적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일시금에 대한 선호 현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없다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모두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 일시금이 중추적인 급여 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노후소득원의 1층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2층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지급방식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 사항밖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적립)기간 중 축적한 적립금을 퇴직 후 종신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연금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본격적인 수급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²⁾.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0세이지만 2013년에 61세로 상향되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추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출 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급여 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2007년 7월 법 개정으로 3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최종 소득이 아님)의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실적으로는 실업, 건강 및 개인 사정으로 근로의 단절 현상³⁾이 발생하여 실제 가입기간은 가상적인 가입 기간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고, 최종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수급연령 인상 및 대폭적인 급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2045년에 적자 상태로 전환되고 2060년경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partially-funded system)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고갈되면 이후에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이행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65년경 2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종신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9년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사례는 지나치

2)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할 것이다. 2010년 3월 말 기준 20년 가입자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4만 3,719명에 불과하다.

3) 노동패널 및 고령화연구패널의 임금근로자 생애 주직장의 평균 직업기간도 22년에 불과하다(방하남 외, 2009).

게 높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결국은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원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

연금전환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의무화시키는 방식과 개인들의 판단에 일임하는 방식이 있다. 국가에서 의무화시키면 정책 효과는 매우 높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현재와 같이 개인들의 판단 사항으로 일임하면,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지만 개인의 근시안성, 일시금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해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일부 국가 및 퇴직연금기금(pension scheme)에서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시킨 대안으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후소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의무화 방안과 디폴트옵션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칠레, 영국, 스위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연금전환 유도 정책 및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 및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시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립금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잔여 적립금을 대상으로 연금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그리고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착륙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금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선행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II 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연금전환 정책, 우리나라 현황 및 연금전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칠레, 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와 같이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접어든 국가들의

연금전환 유도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서로 다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각 방식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자발적 선택에 일임할 때와 의무 전환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연금지급률 격차를 추정한다. 또한 연금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모색된 새로운 지급옵션에 대해 살펴본다. V장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연금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제안하고, 마지막 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의무화 정책 및 디폴트옵션 정책의 효과, 각종 전략과 바람직한 상품, 국가 간 제도 비교 및 정책 효과 비교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Orth(2004)는 미국 DC에서도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5만 달러 미만 또는 적립금의 30%를 75세 시점까지 연금으로 전환하되 긴급 상황에 처하면 잔여 적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무 연금전환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디폴트옵션 방식에서는 사전에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명시적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opt-out)을 주장한다. 동 방식은 타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며, 주로 행동재무론(behavioral finance)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금전환과 관련된 디폴트옵션 정책의 효과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974년 ERISA법에서 연생연금(joint and survivorship annuity)⁴⁾을 DB제도의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도록 한 이후 단생연금(single life annuity)⁵⁾ 대신 연생 연금을 선택한 비중이 25%p 증대되었다고 한다(Holden and Nicholson, 1998). 이어 1984년에는 기혼자가 단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생연금 선택 비중이 다시 10%p 높아졌다(Aura, 2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금전환과 일시금에 대한 선택 행위가 아니라 연생연금과 단생연금 간 선택행위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Johnson et al.(2003)은 미국에서 1992~2000년 사이에 퇴직한 1931~1941년생 DB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과 일시금 선택 행위를 분석한 결과, 디폴트옵션을 연금으로 제시하면 연금 선택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남자의 연금 선택 비중은 전체 자산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으며, 흑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에서 연금 전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디폴트로 제시된 연금이 일시금에 비해 자금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비해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 Motolla and Utkus(2007)는 500대 기업에 속하는 2개사 DB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 상태에 따른 연금전환 비중은 디폴트옵션 방식으로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기혼자(DB: 25%, Cash Balance⁶⁾: 16%)가 그렇지 않은 독신자(DB: 36%, cash balance: 18%)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재무론자⁷⁾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4) 연생연금은 연금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인데, 연금지급은 마지막 연금수익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두 사람 모두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종료된다. 예를 들면, 부부가 연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부가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연금지급은 계속된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하면 연금지급은 중단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생존할 때 연금급여의 감소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이경룡, 2009, p. 481).

5) 단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6) Cash Balance는 DB제도와 DC제도가 혼합된 하이브리드제도이나 세법상 DB제도로 분류된다.

7) Thaler, Sunstein, Benartzi, Madrian, Metrick 등이 해당된다. 탈러·선스타인(2008)은

만약 401(k)제도의 가입, 기여율, 자산배분 등 적립단계⁸⁾와 마찬가지로 지급 단계에서도 타성이 선택 행위에 큰 영향을 준다면 기혼자들의 연금 선택 비중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디폴트로 지정된 연금전환 옵션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공공장소에 출두하여야 하며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두고 지급단계에서는 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퇴직 시점에 이르렀을 때 기혼자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에 참여하는 현상은 적립단계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은 적립 단계와 달리 가입자의 재무상태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World Bank, OECD, 국제연금감독자협의회(IOP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visor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연금전환 관련 규제 및 현황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연구는 World Bank에서 후원한 Rocha et al.(2010)이다. 동 연구에서는 이미 지급단계에 진입한 5개국(호주, 칠레,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지급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지급옵션에 대한 정부 및 연금기금의 규제, 연금전환 수준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이다. 이러한 국가별 비교를 통해 관련 상품, 가격 규제, 마케팅, 자본 요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역시 World Bank에서 후원한 Rocha and Vittas(2010)에서는 정책 당국이 적정 수준의 연금전환 수준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로 설정한 수준을 충족시킨 후 잔여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시금 수령 후 자가연금 전략(self-annuitization strategy)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상당 수준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고연령에서는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넛지(nudge)’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므로 넛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 적립단계에서의 401(k)에 대한 디폴트옵션 정책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시오.

IOPS(2008)는 개인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종국적으로는 퇴직 후 불충분한 소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제도 설계 및 정책 도구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가입자 교육, 개인의 선택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규제, 상품 및 제도 표준화 (product/plan standardization), 경쟁 및 시장규율, 디폴트옵션 등이다.

II. 연금전환 정책과 필요성

1. 연금전환 정책

가. 의무 연금전환 정책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적 부문에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연금 전환 정책(compulsory annuitiz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축적 과정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주로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DB 외에 DC 및 IRA에 대해서도 연금전환을 요구한다. 즉, 정부에서 세제를 지원한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FY2007에 부여한 세제 혜택 규모는 189억 파운드(약 21조 원)로 추정되었는데 이중 60% 정도는 납세자가 부담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무 연금 전환 정책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노후소득원으로만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상속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인 연금전환을 요구한다. 만약 적립금을 연금지급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속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납세자가 개인의 상속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연금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연금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시장 주도(market-led)” 측면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 주도(government-led)” 측면이 더 강하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공평한 조건으로 연금을 구입하고 시장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HM Treasury, 2009).

의무 연금전환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장수리스크 및 투자리스크를 금융기관으로 전가시키기 때문에 사망 시점까지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상품 유형을 연생연금으로 선택하면 가장 사망 시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둘째, 가입자 사망 시 잔여 연금재원을 위험단체 내 다른 가입자에게 연금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자의 소비수준을 높일 수 있다⁹⁾. 셋째,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역선택리스크를 축소시켜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연금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로 평균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구입하므로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면 평균적인 기대수명 이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연금을 구입해야 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고 그 결과 연금지급률¹⁰⁾도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연금전환을 의무화하여 시장이 확대되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촉발되면 사업비 측면에서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개발 압력도 증대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반면, 의무적인 연금전환 정책은 확일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

9) 이와 같은 초과 수익률을 사망률 견인(mortality credit, mortality drag), 사망률 프리미엄(mortality premium)이라고 표현한다. 자세한 내용은 <IV장 1-나>를 참조하시오.

10) 연금지급률은 연금현가(annuity factor, a_x 로 표기)의 역수와 일치한다. 연금현가는 연금수급자의 잔여 생존기간 동안 지급하는 1단위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SP 을 일시납보험료, A 를 연금급여로 정의하면 연금지급률 A/SP 는 $1/a_x$ 와 같다.

다. 첫째, 의무 적용이므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한다. 현실적으로 연금전환이 최적이지 아닌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못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의무적으로 연금전환시키면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질병, 장기간병, 배우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퇴직연금 적립금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산으로 긴급자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적립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부분 일시금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종신토록 연금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우려도 있다.

〈표 II-1〉 의무 연금전환 정책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전가 • 높은 소비 수준 유지 가능 • 가입자 수 증대 → 역선택 축소 → 가격 경쟁력 증대 • 다양한 가입자 정보에 기반하여 위험 세분화 (저소득·고위험 계층에게 높은 급여지급)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택을 제한 •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하므로 유연성 저하 •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 존재 |

나.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디폴트 연금전환(default annuitization) 정책은 의무 연금전환과 달리 개인의 선택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로 행동재무론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된 정책이다. 관련 학자들은 개인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401(k)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행동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를 근거로 퇴직연금제도에서도 디폴트옵션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란 특정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기본 값¹¹⁾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설계하고 이를 선택 메뉴로 제시한 후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무화 정책과 달리 디폴트옵션의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언제든지 적용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주의적이란 말은 개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입주의란 말은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 사항(옵션)을 설계할 때 사람들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요하는 옵션 즉, 최소 저항 경로(path of least resistance)를 취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주어진 선택 사항에 디폴트옵션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택한다고 본다. 그리고 해당 디폴트옵션이 암묵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표준을 의미할 경우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한다(탈러 · 선스타인, 2008, pp. 138-139).

이들이 디폴트옵션의 활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은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서도 이를 제고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지급단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u and Scott, 2007; Lusardi and Mitchell, 2007a & 2007b). 따라서

11) 기본 값은 옵트 인(opt-in)과 옵트 아웃(opt-out)이 가능하다. 옵트 인은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해당 조치를 취하는 정책인데 비해 옵트 아웃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옵트 인 정책과 옵트 아웃 정책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 값 설계가 중요하다.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당사자(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등)들이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 즉 사전에 잘 설계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¹²⁾, 연금전환에 대한 선택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DC, IRA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 DB와 일부 DC¹⁴⁾에서는 연금전환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D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01(k)에서는 일시금이 디폴트옵션이다. 따라서 401(k)에서 디폴트옵션을 연금과 같이 소득흐름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DC와 달리 DB에서는 기혼자에게 디폴트옵션 방식으로 연생연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1974년 ERISA법에서 DB에 가입한 기혼자의 디폴트옵션을 연생연금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혼자가 더 높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단생연금을 선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생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이다. 1984년에는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여 기혼자가 연생연금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B에 가입한 기혼자가 단생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DB 외에 스위스에서도 디폴트옵션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정부 주도인 미국 DB와 달리 연금기금 중심으로 동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장점은 적용제외를 허용하므로 다른 옵션을 선택하

1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2)에 의하면, 65세 중간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00년 41.2%에서 2030년 36.5%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13)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와 Cerulli Associates(2003)는 전체 노후소득에서 정부(공적연금)와 사용자(DB 종신연금)가 부담하는 책임이 1974년 56%에 달하였으나 2030년경에는 24%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개인의 책임(DC, IRA, 근로소득)은 44%에서 76%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였다(The Principal Financial Group, 2008에서 재인용).

14) 사용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시켜 주는 제도(money purchase pension plans)를 말한다.

고자 하는 개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정도 표준화된 옵션 설계를 통해 정보 제공 및 가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책 효과 대비 비용이 높지 않다는 측면도 장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지급단계에서는 적립단계와 달리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I 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실증 분석 결과(Mottola and Utkus, 2007)에서와 같이 개인들이 퇴직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정책 효과가 낮아 위험단체가 평균적인 기대수명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 위주로 형성된다면 역선택리스크가 높아져 연금전환 시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저하로 인해 연금전환 수준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표 II-2〉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택권 존중 • 표준화를 통해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효과 대비 비용이 높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계에서는 디폴트옵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디폴트옵션을 연금전환으로 제시할 경우 연금전환 선택 비중이 높아진다는 경험 근거 미약 • 위험단체가 크지 않으면 역선택 증대 → 가격경쟁력 상실 → 연금전환율이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 |

2. 우리나라 현황

가. 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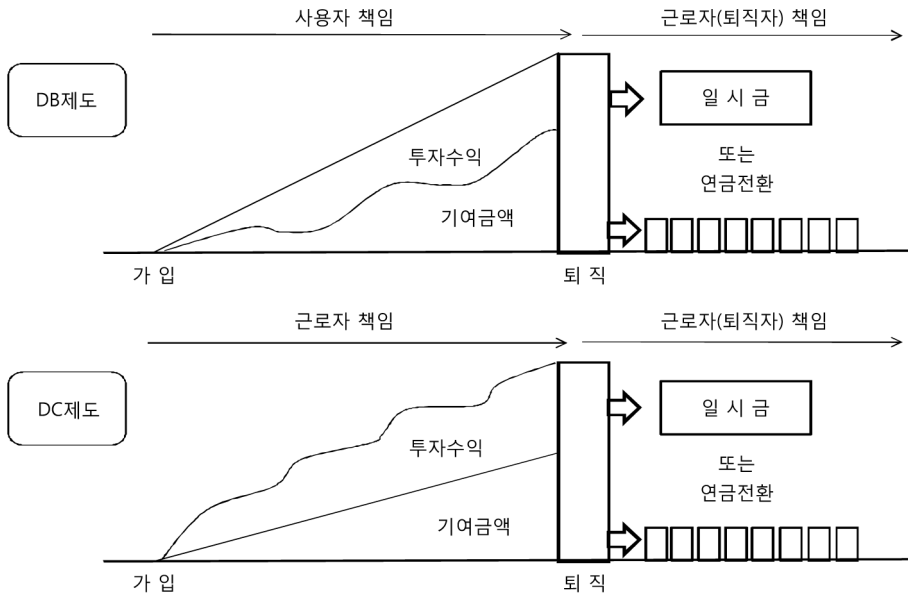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보다 훨씬 늦은 2005년 12월에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퇴직금, 퇴직보험(신탁)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이행 중에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로 보면 연금 지급이 기본이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제에서는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선진국 DB는 사용자가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데 비해 우리나라 DB는 그렇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지급방법으로 DB와 DC 모두 일시금과 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그림 II-1〉 참조). 연금수급 자격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년 이상 수급을 요구한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적립금 전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급 측면에서 볼 때 DB와 DC 간 차이가 없고 지급단계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¹⁵⁾.

우리나라에서 연금전환과 관련된 법·규제가 미비한 것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을 퇴직금제도와 유사하게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종료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택 사항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금을 디폴트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연금전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이 없어 전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연금전환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급방식



자료 : Lee and Sung(2010), "A New Korean Defined Contribution Plan Framework to Enhance Retirement Income Security: Combining Lifecycle Funds with Compulsory Annuitization",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p. 53.

나.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시금 수령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일시금이 디폴트옵션의 역할을 한다는 것 외에도 일시금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의 인출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¹⁶⁾. 급여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데 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6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적용한다.

16)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2006년 1월에 새로 도입되었으나 기본 내용은 2001년부터 적용된 기존 연금소득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일시금 수령 시 과세표준은 퇴직일시금에서 급여비례공제(45%)와 근속연수별 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산출한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을 다시 근무연수로 나누고 그 금액에 세율(8~35%)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¹⁷⁾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23년 2개월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3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실효세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진수·김재진, 2007, pp. 35-36). 이에 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총 연금급여(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가 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6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는 과세대상소득의 5.5%¹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는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과 일시금간 소득세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일시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금액도 50%에서 45%로 축소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다시 45%에서 40%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다¹⁹⁾. 이러한 일련의 세제 정책은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퇴직자가 연금전환을 선택할만한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세제 하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

17) 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18) 소득세 5% + 주민세 0.5%

19)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8월 24일 발표한 내용이다.

록, 연금 수급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전환 시 과세가 일시금에 비해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수·김재진, 2007; 보험개발원, 2008; 임병인·김세환, 2004). 더욱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급여가 존재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시금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세제

| 일시금 | 연금소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일시금-급여비례공제(45%)*-근속연수별공제}×1/근속연수×기본세율(8~35%)×근속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시 5.5% 원천징수 • 연금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350만 원~700만 원: 350만 원+350만 원 초과금액의 20% 공제 - 700만 원~1,400만 원: 490만 원+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공제 -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한도 900만 원) 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세율적용 특혜 없음 |

주: * 2011년부터 40%로 축소됨.

3. 연금전환 필요성

가. 안전한 노후소득 확보

근로기간 중에는 임금이라는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임금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빈곤상태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통계

에 의하면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빈곤상태에 처한 비율은 65~69세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Whitman and Purcell, 2006). 퇴직 후 직면하는 리스크는 장수리스크, 인플레이션리스크, 재무리스크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 모두 또는 이들 요인 중 몇 개가 결합되어 생존기간 중 보유한 자산이 소진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퇴직 후에는 연금급여와 같이 지급이 확정된 안전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전 세대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는 자식들이 86.3%에 달하며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0.8%로 낮아진다(〈표 II-4〉 참조).

〈표 II-4〉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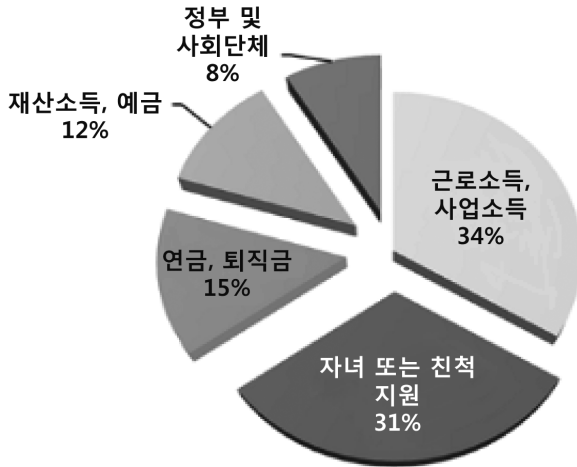
(단위 : %)

| 연령 | 장남 (만며느리) | 아들 (며느리) | 딸 (사위) | 모든 자녀 | 부모 스스로 해결 | 기타 | 계 |
|--------|--------------|-------------|-----------|----------|-----------------|-----|-------|
| 15세 이상 | 14.6 | 10.5 | 1.9 | 25.9 | 46.6 | 0.5 | 100.0 |
| 50~59세 | 23.7 | 15.9 | 2.5 | 33.1 | 23.7 | 1.0 | 100.0 |
| 60세 이상 | 35.3 | 16.6 | 4.1 | 30.2 | 12.7 | 1.0 | 100.0 |
| 65세 이상 | 41.0 | 21.5 | 3.9 | 22.4 | 10.8 | 0.3 | 100.0 |

자료 : 통계청(2009b), 『사회조사보고서』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을 조사하였는데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이 33.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진국에서 중추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역할하고 있는 연금 관련 소득(공적연금 및 퇴직금 포함)은 14.7%에 불과하다.

〈그림 II-2〉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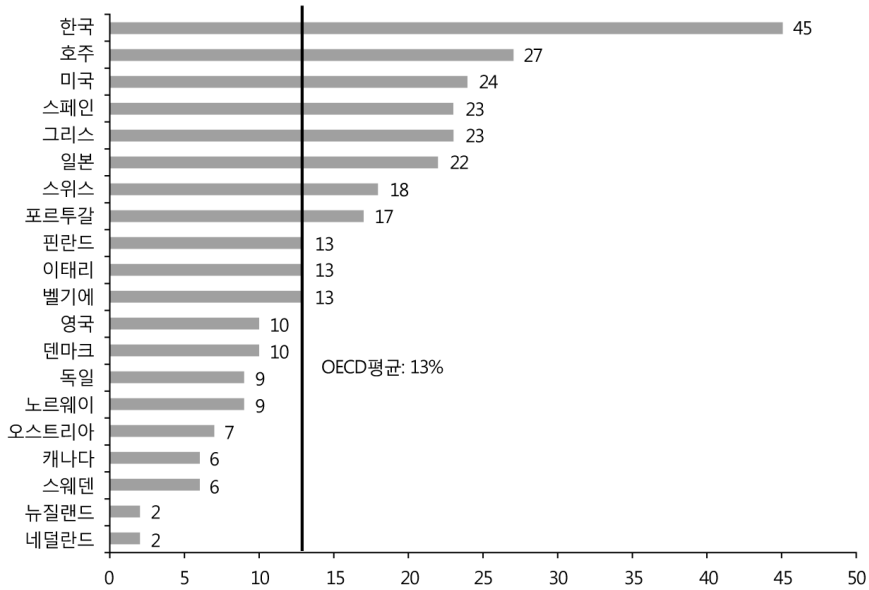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0), 『사회조사보고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적인 사적이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OECD 측정 기준에 의하면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급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연금 수령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이에 비해 캐나다(6%), 스웨덴(6%), 뉴질랜드(2%), 네덜란드(2%) 등에서는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급이 확정된 연금 급여가 노후 중추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급원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다변화시킴으로써 다층 노후보장체계를 잘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20)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퇴직연금제도 역시 최근인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그림 II-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빈곤율



주 :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가구의 50% 미달 시 빈곤가구로 분류함.

자료 : OECD(2010), *Pensions at a Glance 2009* 수정 작성함.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종 연금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노후소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근로를 계속하려는 유인이 매우 높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55~64세 인구의 7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연령 계층에서도 41.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관계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1차 베이비붐 세대²¹⁾는 아직 본격적인 퇴직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 후 직면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큰가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체의 평균 정년이 58세 미만이며²²⁾ 가장 오래 근무한

21)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 인구 집단의 규모는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22) 2009년 6월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현황 및 정년제도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평균 정년은 57.14세로 파악되었다.

일자리 이직 연령은 그보다 짧은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여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 이들은 평균 자녀수가 4명(2009년 기준)인 60세 이상 세대와 달리 평균 자녀수도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표 II-5〉 우리나라 고령자의 취업의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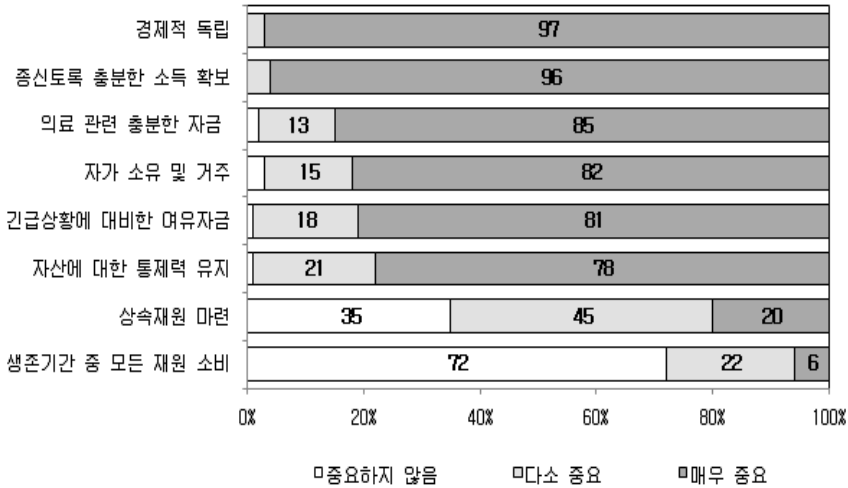
| 연령 | 장래 근로 원하지 않음 | 장래 근로 원함 |
|-------------|--------------|----------|
| 55~64세 | 27.8 | 72.2 |
| 65~79세 | 58.2 | 41.8 |
| 전체 (55~79세) | 42.4 | 57.6 |

자료 : 통계청(2009a), 『2009 고령자통계』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종국적인 목표는 근로기간 중 적립금을 축적하는 저축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기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된 미국에서는 퇴직자의 주요 관심 사항이 경제적 독립과 종신토록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축적된 적립금을 안전한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과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23)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입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MetLife, 2009). 401(k) 가입자 중 일시금을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50%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발생 6개월 후인 2009년에는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림 II-4〉 미국 퇴직자의 주요 관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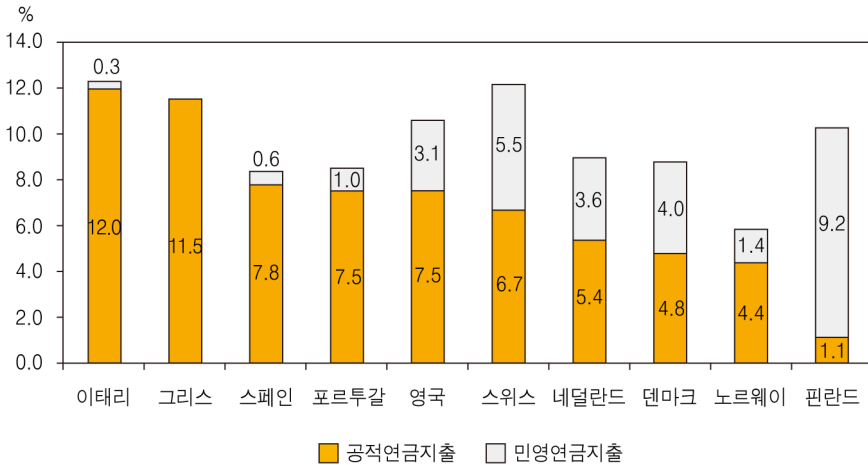
주 : 가계의 투자자산이 20만 달러 이상인 55~80세 942명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 LIMRA(2009), *The Positioning of Assets in Retirement*

나. 국민연금의 불충분성 및 재정불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불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2009년 남유럽 4개국(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재정위기 원인 중 하나가 공적연금의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된다. 유럽 주요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중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그림 II-5〉와 같다.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거의 모든 연금 지출을 공적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민영연금인 퇴직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태리는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12.0%인데 비해 퇴직연금 지출 비중은 0.3%에 불과하여 공적연금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공적연금 비중이 7.5%이고 퇴직연금 비중도 3.1%에 달해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보인다.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대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공적연금 지출이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위기 경험 국가에서는 전체 정부지출 중 공적연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한다. 특히 이태리는 정부지출의 29%를 연금지급에 사용하였으며 그리스도 27%에 달할 정도로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되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연금개혁을 단행한 국가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종신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원을 다변화시킨 국가에서는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 비중이 재정위기 국가에 비해 7~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유럽 주요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2006)



주 : 그리스는 2005년 기준임.
 자료 : OECD(2010), *Pensions at a Glance 2009*

〈표 II-6〉 유럽 주요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 비중(2005)

(단위 : %)

| 재정위기 경험한 국가 | | 재정위기 경험하지 않은 국가 | |
|-------------|------|-----------------|------|
| 이태리 | 29.0 | 덴마크 | 10.3 |
| 그리스 | 26.6 | 네덜란드 | 10.9 |
| 포르투갈 | 22.0 | 노르웨이 | 11.5 |
| 스페인 | 21.0 | 영국 | 12.8 |
| | | 스웨덴 | 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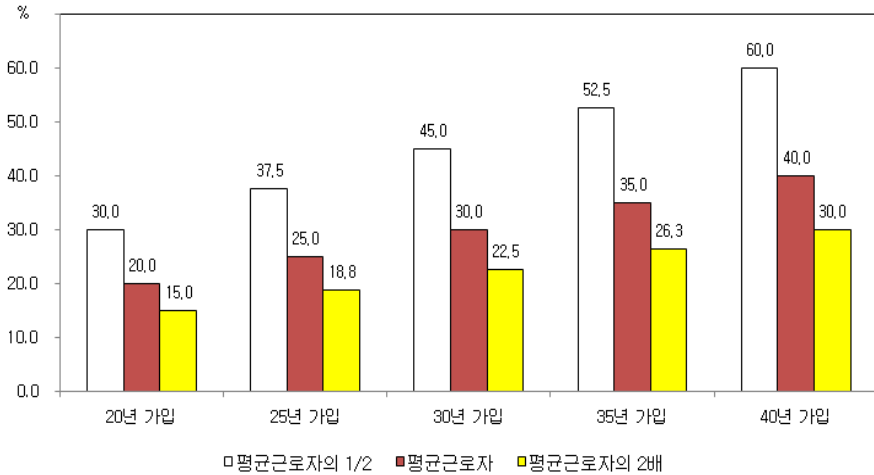
자료 : OECD(2010), *Pensions at a Glance 2009*

우리나라는 1988년에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금 급여 개시 전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차례 연금급여 및 보험료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07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구조적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모수적(parametric) 연금개혁²⁴⁾을 단행하였다. 핵심 조치는 보험료는 기존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기존 60%에서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춘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과 달리 최종 소득이 아닌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적정 수준으로 간주되는 최종 소득 대비 60~70%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 저소득층(평균 근로자 소득의 1/2)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30%(20년 가입)~60%(40년 가입) 수준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나 중간 소득층은 40년을 가입해도 40%에 불과하다. 고소득층(평균 근로자 소득의 2배)은 더 낮아져 15%(20년 가입)~30%(40년 가입)에 불과하다(문형표 편, 2007, p. 140).

24) 모수적 연금개혁이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수급연령과 같은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림 II-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주 : 1) 2028년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2) 소득대체율=연금급여/가입기간 평균 소득
 자료 : 문형표 편(2007),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Ⅰ)』, 한국개발연구원, p. 140 수정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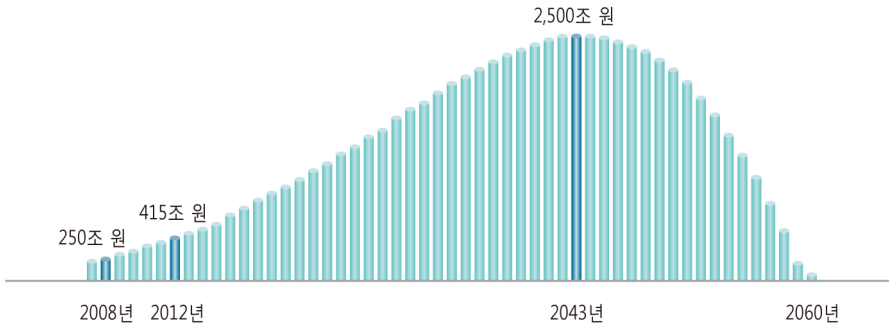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대상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기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를 참고하면, 공적 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남자 6년, 여자 13년으로 추정되었다(Munell and Soto, 2005). 따라서 가상적으로는 40년 가입자를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자의 가입 기간은 34년 정도이며 여자는 이보다 7년이 더 짧은 27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기간과 강제적인 정년 퇴직제도를 운영하여 미국보다 취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미만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원으로서는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중간소득 이상 계층에 대해서는 보장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불충분성은 2008년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 부가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석상훈 외(2009)가 실시한 국민연금 수급예정자의 예상 기본 연금급여

수준은 33만 원(남자 36만 6천 원, 여자 20만 1천 원)에 불과하다. 이는 2008년 현재 60세 미만 가입자 중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한편, 2007년 큰 폭의 급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림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2045년 경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금고갈 이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근로 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23.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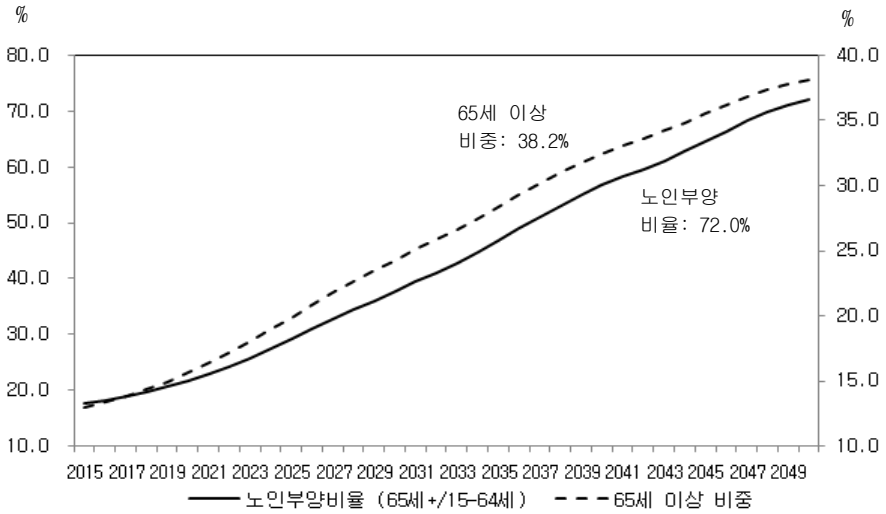
<그림 II-7> 국민연금기금 재정 추계



자료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당기 근로 계층이 퇴직자의 연금급여 재원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자원조달방식이다. <그림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 증대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도 2015년 17.6%에서 2050년에는 7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II-8〉 65세 이상 비중 및 노인부양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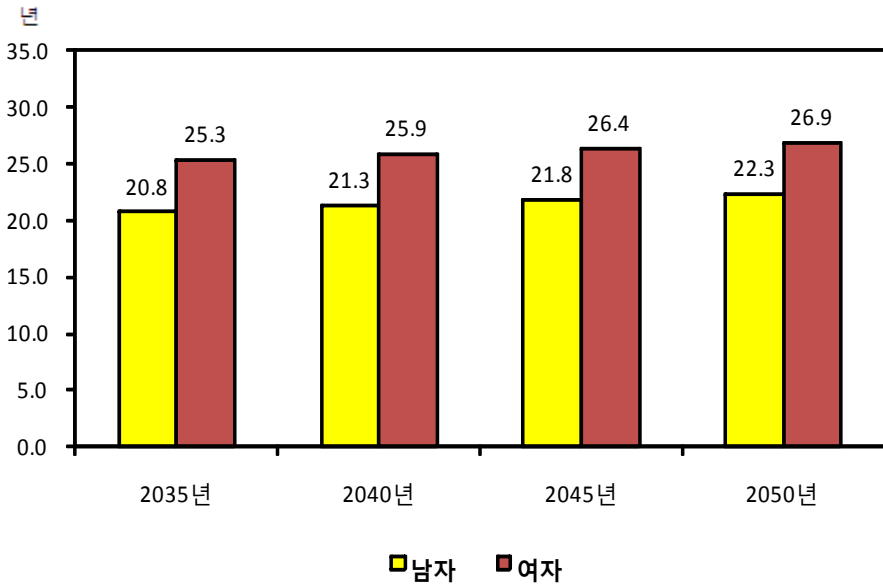


주 : 좌측은 노인부양비율, 우측은 65세 이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늦추어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될 것이다. 또한, 2040년 무렵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보다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²⁵⁾은 〈그림 II-9〉와 같이 2050년 경에는 남자 22.3년, 여자 26.9년에 달할 정도로 길어질 것이다. 또한, 이 시점에 도달하면 가입자는 1,200만 명인데 비해 수급자는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 수급자 급증과 사망률 개선에 따른 수급 기간의 증대, 저출산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 등이 현실화 되면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25) 평균 수급 기간은 평균기대수명에서 65를 차감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림 II-9〉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



주: 평균 수급 기간 = 평균 기대수명 - 65

Ⅲ.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

본장에서는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 가격비교 및 정보 제공 등 연금전환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비교하기로 한다. 대상 국가는 칠레, 영국, 스위스, 미국 및 호주 5개국으로 선정하였다.

1. 연금전환 정책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5개국은 연금전환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칠레와 영국은 정부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²⁶⁾, 스위스와 미국 DB는 디폴트 옵션 방식으로 유도한다. 이에 비해 미국 DC 및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전환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칠레와 영국은 가장 강력한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미국 DC와 호주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가장 느슨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는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서 의무적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시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여 적립금 규모가 특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시금을 허용한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 수준은 2004년 이전에는 퇴직 전 10년 평균 실질임금의 50%와 최저 연금의 110%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나 2004년 법

26)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이 값을 각각 70%와 150% 수준으로 높였다. 동시에 평균 실질임금 산정 시 보험료 납입이 없었던 기간은 제외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일시금을 제한하였다. 2008년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실질임금의 70% 조건은 유지하였으나 최저 연금요건을 사회적 연대요건(PMAS: the maximum pension with solidarity complement)²⁷⁾의 80% 수준으로 변경하여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영국은 칠레와 달리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DB뿐만 아니라 DC, 개인퇴직계좌 등 모든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영국의 연금전환 관련 정부 정책이 강력한 것은 일찍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978~1988년 동안 DB 선택 시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 out)를 인정하였다. 동 제도가 확대되어 1988년부터는 DC(money purchase)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제외가 인정되었다. 적용제외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방식에서도 공적연금과 동일한 종신연금 형태로 제한한 것이다²⁸⁾.

〈표 Ⅲ-1〉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 국가명 | 의무 연금전환 | 디폴트 연금전환 | 정책 없음 |
|-----|---------|----------|-------|
| 칠레 | ○ | | |
| 영국 | ○ | | |
| 스위스 | | ○ | |
| 미국 | | ○(DB) | ○(DC) |
| 호주 | | | ○ |

27) 사회적 연대요건 충족 조건은 2008.7~2009.6 USD 161(원화 18만 원), 2009.7~2010.6 USD 276(원화 31만 원)이다.

28) 이러한 정책 시행 결과 퇴직단계로 접어드는 퇴직자의 50% 정도는 공적연금보다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급여 규모가 더 크다.

스위스는 198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 적용하였으나, 칠레, 영국과 달리 연금기금위원회에서 디폴트옵션 정책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한다²⁹⁾. 사용자들은 자체적인 연금기금을 설립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³⁰⁾ 주로 연금기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에서 연금전환을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DB는 국가에서 ERISA법을 통해 연생 연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연금전환을 의무화하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유도하는 국가(또는 연금기금)와 달리 미국 DC와 호주에서는 정부(또는 연금기금)의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자발적 연금전환 방식을 따르고 있다.

2.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

가. 지급옵션 규제

정부에서는 연금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급옵션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분 일시금, 즉 부분 연금전환(partial annuitization) 허용 여부, 연금지급 기간에 대한 제한 및 프로그램인출 방식³¹⁾의 허용 여부, 기혼자에 대한 연생연금 적용 여부 등이다. 부분 일시금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또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종신연금이 가장 부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확정된 기간만 지급하는 확정형연금(annuity certain)과 자산의 조기 소진

29)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당시 대부분의 제도가 DB 중심이었다. 이후 퇴직연금의 이전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DB에서 DC로 전환되어 DC 비중이 85%까지 높아졌다.

30) 2002년 기준 연금기금수가 8천여 개에 달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기업들의 아웃소싱과 그룹 계열사가 연금기금을 합동 운영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31) 프로그램인출 관련 내용은 이경희(2009)를 참조하시오.

이 가능한 프로그램인출 방식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킨 칠레에서는 지급옵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다. 부분 일시금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전부 일시금은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최저 연금 150%와 소득대체율 70% 충족)일 때만 허용하므로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 지급기간도 확정형은 허용하지 않고 종신행만 허용한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연금 구입 수준에 미달하면 연금전환할 수 없고 연기금회사(AFP)에서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연기금회사가 연간 인출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익률, 사망률은 정부에서 제시하는데 이는 인출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조기에 적립금이 소진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옵션 규제로서 기혼자가 연생연금을 구입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며, 보험회사는 연금수급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증기간을 설정해야 한다³²⁾.

이에 비해 칠레와 마찬가지로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킨 영국에서는 적립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활용한다. 연금전환 시 최대 25%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잔여 적립금은 50³³⁾~75세에 소득흐름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50~75세 동안에는 연금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인출(income drawdown)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인출을 선택한 퇴직자도 75세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잔여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영국에서는 적립금이 법정 규모(statutory lifetime allowance)의 1% 이하일 정도로 소액일 경우에만 전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한다. 2007년 기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규모는 £17,500(원화 3천만 원) 수준이다. 칠레와 달리 연금상품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기혼자라도 연생연금뿐만 아니라 단생연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1995년까지 연금이 주된 지급방식이었으나, 2005년 이후 부분

32) 보험회사는 5~25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는데 가입자는 대부분 10년과 15년을 선택한다.

33) 2010년부터 50세에서 55세로 높아졌다.

일시금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을 연금, 일시금, 연금과 일시금간 조합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은 종신형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며 프로그램인출이나 확정형연금은 허용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 국가로 2004년까지는 일시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적립금의 25%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어느 정도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금전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별적인 연금기금의 판단 사항이며 적립금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금 허용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 퇴직 3년 전 시점에서 일시금 옵션을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된 가입자들 대부분이 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금단체의 역선택리스크를 축소시키도록 한 것이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스위스와 미국 DB에서도 기혼자에 대해서는 연생연금 형태를 제시하도록 한다. 반면, 미국 DC, 호주에서는 연금전환 여부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므로 지급옵션, 연금방식에 대한 상품 규제도 없다.

〈표 Ⅲ-2〉 주요국의 지급옵션 규제

| 구분 | | 일시금 허용 | | 연금지급기간 | | 프로그램 인출 허용 | 기혼자 연생연금 적용 |
|-----------|-------------|-----------------|-----------------|--------|----|-----------------|-------------|
| | | 전부 | 부분 | 확정 기간 | 종신 | | |
| 의무 | 칠레 | △ ¹⁾ | × | × | ○ | ○ ⁵⁾ | ○ |
| 연금전환 | 영국 | △ ²⁾ | ○ ³⁾ | × | ○ | ○ ⁶⁾ | × |
| 디폴트 | 스위스 | ○ | ○ ⁴⁾ | × | ○ | × | ○ |
| 연금전환 | 미국 DB | | | | ○ | | ○ |
| 자발적 선택 일임 | 미국 DC 호주 | 규제 없음 | | | | | |

- 주 : 1) 적립금이 일정 규모(최저 연금 150%와 소득대체율 70%) 이상일 때만 허용
- 2) 적립금이 일정 규모(법정 규모의 1%, £17,500) 미만일 때만 허용
- 3) 적립금의 0~25%까지 가능
- 4) 적립금의 25~100%까지 가능
- 5) 적립금이 최저 연금 수준에 미달하면 의무 사항
- 6) 연금전환 전 75세 이전까지만 활용 가능

자료 : Rocha et al. (2010),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나. 가격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 가격을 자유화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금가격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킨 칠레와 영국에서도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시장에 일임한다. 그러나 디폴트옵션 방식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스위스에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연금가격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 부문(mandatory part)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 연금지급률을 규제하는 방식이다³⁴⁾. 의무 부분은 최저 소득(20,000CHF, 원화 2천 3백만 원)과 최대 소득(82,080CHF, 원화 9천 5백만 원) 사이에 속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 속하면 최저 연금지급률을 규제하는 반면, 최대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의무 부문에 대해서는 법정 연금지급률을 적용³⁵⁾하는데 이것이 최저 수준이 된다. 2004년까지는 연금지급률이 결혼여부 및 성별과 무관하게 7.2%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었다³⁶⁾. 그러나 높은 연금지급률은 시중 금리가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부터는 6.8%로 낮아질 예정이다. 의무 부문에 대해서는 남·녀, 기혼·미혼 간 동일한 연금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의무 부문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격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기금에서 연금지급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대형 보험회사들은 연금지급률을 5.4~5.8%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연금기금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법정 연금지급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34) 연금급여는 적립금에 연금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적립금을 SP , 연금지급률을 γ 라고 표현하면 연금급여는 γSP 가 된다.

35) Legal annuity conversion factor라고 하며 LPP(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에서 규정하고 있다.

36) 이는 투자수익률 4%(책임준비금 적립이율에 상응)와 사망률의 상호보조 효과(mortality drag) 3.2%의 합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망률의 상호보조 효과는 <IV장 1-나>를 참조하시오.

37)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아동수당 20%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60%이다.

〈표 Ⅲ-3〉 주요국의 연금전환 관련 가격 규제

| 스위스 | 칠레, 영국, 미국, 호주 |
|---|----------------|
| 가격규제 있음 | 가격규제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부문에 대해 국가에서 연금지급률 7.2% 적용 • 2014년부터 6.8% 수준으로 인하 예정 | - |

3. 가격 비교정보 제공

연금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시킨 칠레나 영국에서는 개인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적립금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가격비교 시스템(SCOMP, 이하 ‘SCOMP’로 칭함)³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개시장옵션(OMO: open market option, 이하 ‘OMO’로 칭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 칠레의 가격비교 시스템

칠레에서는 1990년대 높은 판매수당, 불법 마케팅과 관련된 현금 리베이트 등 연금전환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문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수수료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다. 제도 개정의 일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고³⁹⁾ 퇴직 예정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다. 퇴직 예정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금전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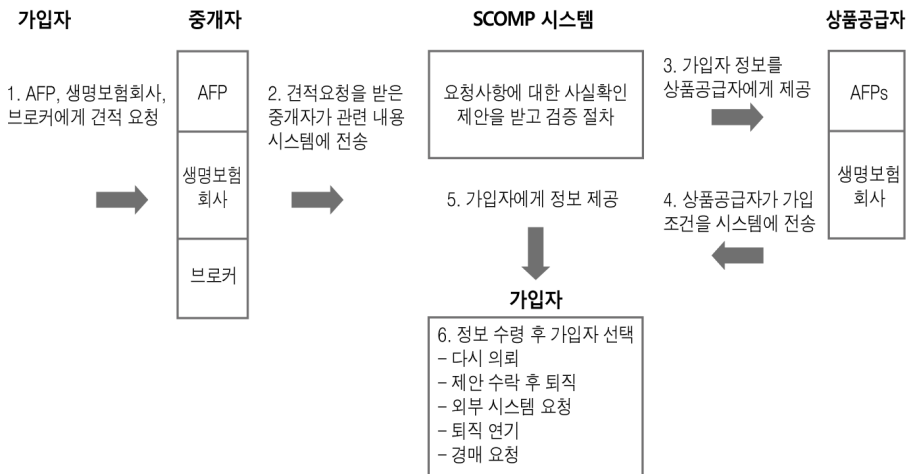
38) *Sistema de Consultas y Ofertas de Montos de Pension*

39) 자세한 내용은 이경희(2010, 10, 4)를 참조하시오.

첫째, 퇴직하려는 가입자가 AFP, 브로커,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선정하여 연금가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한다. 둘째, 요청받은 중개기관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연령, 성, 적격성, 적립금 규모)를 시스템에 송부한다. 셋째,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코드를 부여한 후, 관련 정보를 상품공급자에게 전송한다. 넷째, 생명보험회사는 시스템에 자사의 가격견적을 송부하고, AFP도 프로그램인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인출금액 정보를 보낸다. 다섯째, 시스템에서 AFP와 보험회사가 제시한 견적을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이때 전송한 견적 내용은 15일간 유효하다.

가격 정보를 입수한 퇴직 예정자는 견적을 수락하거나, 시스템에 다시 견적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부 컨설팅 시스템에 의뢰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경매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스템 내에서 경매를 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적어도 3개 이상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며, 최저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퇴직 예정자가 요청한 경매에서 1사 이상 응찰하면 그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구체적인 SCOMP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SCOMP 운영 시스템



자료 : IOPS(2008),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p. 10.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8월 SCOMP 도입 이후 2007년까지 견적을 요청한 가입자는 11만 5천 명, 전체 요청건수는 14만 9천 건에 달해 1인당 요청건수는 1.3건으로 추산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요청건수 중 개별 중개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브로커가 38.9%로 가장 높고, AFP 34.3%, 생명보험회사 26.8% 순이다. 견적을 요청한 가입자의 82% 정도가 견적 결과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SCOMP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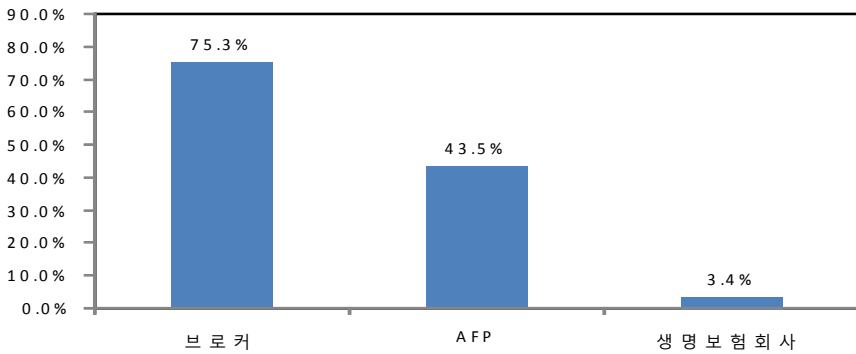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

| 연도 | 요청 건수 | 요청 가입자수 | 1인당 요청건수 | 수락 건수 | 비중 | | |
|------|---------|---------|----------|--------|------|------|------|
| | | | | | 브로커 | 생보사 | AFP |
| 2004 | 17,275 | 14,426 | 1.20 | 9,849 | 40.8 | 27.9 | 31.3 |
| 2005 | 43,434 | 33,714 | 1.29 | 28,294 | 36.6 | 25.2 | 38.2 |
| 2006 | 37,309 | 29,154 | 1.28 | 23,146 | 38.9 | 26.7 | 34.4 |
| 2007 | 51,137 | 37,606 | 1.36 | 32,524 | 40.2 | 27.8 | 32.0 |
| 전체 | 149,155 | 114,900 | 1.30 | 93,813 | 38.9 | 26.8 | 34.3 |

자료 : IOPS(2008),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p. 10.

퇴직 예정자의 지급옵션에 대한 선택 결과는 어떤 중개기관을 경유해서 시스템에 접속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와 같이 최저 가격 선택 비중은 브로커를 경유하면 75.3%로 가장 높고, AFP는 44%, 생명보험회사는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개인들이 금융회사 간 가격비교 기능을 갖는 브로커를 통해 연금전환하면 가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Ⅲ-2〉 SCOMP 접근 채널별 최저 가격 선택 비율



자료 : IOPS(2008),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p. 11.

2007년 12월 기준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신연금을 선택한 퇴직자 중 20.7%는 시스템 내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하였으며 나머지 79.3%는 시스템 외부의 조건을 선택하였다. 비록 상당수의 개인이 시스템 외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하였지만, 가격비교 시스템은 퇴직 예정자들의 연금전환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전환된 적립금 규모 중 63%가 최저 가격으로 전환되었으며, 85.3%는 최저 가격 순으로 세 번째 조건 내에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SCOMP를 통한 연금계약 분포(건적 순위별)

(단위 : 건,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전체 | 비중* |
|-------------------|-------|--------|--------|--------|--------|-------|
| 최저 가격(best quote) | 4,409 | 11,638 | 10,033 | 12,285 | 38,365 | 63.4 |
| 두 번째 최저 가격 내 | 1,029 | 2,830 | 2,291 | 2,624 | 8,774 | 77.9 |
| 세 번째 최저 가격 내 | 499 | 1,342 | 1,193 | 1,410 | 4,444 | 85.3 |
| 기타 | 703 | 2,541 | 2,676 | 2,994 | 8,914 | 100.0 |
| 전체 | 6,640 | 18,351 | 16,193 | 19,313 | 60,497 | - |

주 : * 적립금 대비 비중임.

자료 : IOPS(2008),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p. 11.

칠레 정부에서 실시한 수수료 제한 규제와 가격비교 시스템은 연금전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립금 대비 수수료는 1990년대 초반 3% 수준에 달하였으나, 1999년 말에는 6%까지 높아졌다. 이에 적립금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평균 수수료는 2.5% 미만으로 낮아졌다.

수수료 하락 외에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 격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Rocha and Thorburn(2007)에 의하면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MW: money's worth, 이하 'MW'로 칭함)의 표준편차가 크게 축소되었다⁴⁰⁾. MW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연금급여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금전환 시장이라면 보험회사 간 유사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표 Ⅲ-6>과 같이 1999년 이후 MW의 변동계수와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Ⅲ-6〉 칠레의 MW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

| 구분 | 1999. 3 | 2002. 3 | 2003. 3 | 2004. 3 | 2005. 3 |
|-----------|---------|---------|---------|---------|---------|
| 평균(a) | 0.980 | 1.080 | 1.036 | 1.064 | 1.062 |
| 표준편차(b) | 0.049 | 0.047 | 0.042 | 0.045 | 0.045 |
| 변동계수(b/a) | 5.009 | 4.363 | 4.074 | 4.239 | 4.245 |

자료 : Rocha and Thorburn(2007), "Developing Annuities Markets: The Experience of Chile", World Bank, p. 169.

나. 영국의 공개시장옵션

영국의 OMO는 가입자에게 연금전환 시점에서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가입 조건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관련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에서는 가입자가 적립단계에서의 퇴직연금

40) MW에 대한 내용은 <Ⅲ장 6절>을 참조하시오.

사업자를 지급단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으로 개인들은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통해 연금상품의 가격조건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자의 행동분석 결과 연금전환 시점에서 적립단계의 사업자가 연금전환에 대한 최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가입자가 기존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지급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업자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전환 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2년부터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예정자에게 적립단계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먼저 적립단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4~6개월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어 두 번째 서신을 퇴직 6주 전에 송부해야 한다. 두 번째 서신에는 좀 더 상세한 정보, 즉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연금전환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표 Ⅲ-7〉 참조).

〈표 Ⅲ-7〉 OMO 활용을 권유하는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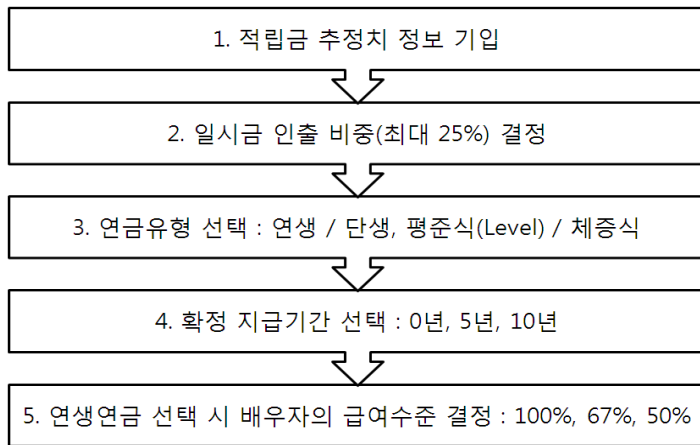
| 퇴직 4~6개월 전 | 퇴직 6주 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 시 제공할 수 있는 연금급여 조건을 제시함 • 만약 가입자가 더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OMO를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 시점의 적립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함 • 가입자는 추정된 적립금을 기준으로 OMO시스템에서 사업자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 |

OMO를 운영하는 주체는 금융소비자교육기관(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⁴¹⁾이다. CFEB는 FSA가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와는 독립된 기구이다. 칠레의 SCOMP와 달리 영국에서는 가입자가 OMO 정

41) 관련 규정은 FSA Conduct of Business 19: Pen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 section 4 Open market options에 있다.

보를 활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OMO에 자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동 시스템에 참여하여 자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MO에서 가격비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림 Ⅲ-3>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입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직 시점의 적립금 추정치를 기입한 후 구체적인 연금전환 조건을 선택한다. 주요 조건은 일시금 인출 비중(0~25%), 연금 유형(연생연금을 원하면 배우자의 급여 수준을 100%, 67%, 50% 중 선택), 연금급여의 보증기간(0년, 5년, 10년)⁴²⁾ 등이다.

<그림 Ⅲ-3> OMO 이용 절차



<그림 Ⅲ-4>는 OMO 시스템에서 임의로 연금전환 조건을 선택한 후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예시한 것이다(2010년 9월 1일 기준). 동일 조건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제시한 연금급여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높은 급여를 제시한 회사(Legal & General)는 £268인데 비해 가장 낮은 급여를 제시한 회사(Scottish Widows)는 £241에 불과하여 양자간 11.7% 격차가 존재한다.

42) FSA에서는 의무 연금전환 시 연금지급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단체 내 사망률의 상호보조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연금지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Ⅲ-4〉 OMO 가격비교 예시

the Money Advice Service™

Help & Support | Media Centre | Cymraeg | Contact us

Search site

Home | Your money | Parents guide to money | Divorce & separation | Comparison tables | News | About us | Working with us

Comparison tables home | Help using this site | Useful links

You are here > Choose a product > Compare Annuities > Annuities results

Annuities results

Search Summary:

You are: Male
 Age when buying an annuity: 65
 Postcode: SW20 0AY
 Smoker/all: All
 Pension fund: £50,000
 Policy: Single
 Guarantee: Guarantee
 Age of spouse: n/a
 Level of income for spouse: n/a

Amend search

This information was last revised on 19/05/2011

10 results of 10 results

Sort by: Provider – alphabetically

| Short-list | Provider | Smoker/All | Monthly income | Better Rates Available | | | |
|--------------------------|-------------------|--------------------|-------------------------|------------------------|------|-----|----|
| Show | | Level | Increasing by 3% | Increasing by RPI | | | |
| | | Enhanced/ Impaired | Restricted availability | | | | |
| | Aegon SE | | Non-participant | | | | |
| <input type="checkbox"/> | Aviva | All | £279 | £203 | £175 | Yes | No |
| <input type="checkbox"/> | Canada Life | All | £269 | £191 | £167 | Yes | No |
| | Friends Provident | | Non-participant | | | | |
| <input type="checkbox"/> | Hodge Lifetime | All | £279 | n/a | n/a | No | No |
| <input type="checkbox"/> | Legal & General | All | £265 | £205 | £172 | Yes | No |
| <input type="checkbox"/> | Prudential | All | £248 | £169 | £146 | Yes | No |

Narrow results 10 results

You can filter your results below:

Enhanced/impaired life annuities: Show All

Restricted availability: Show All

Refine

You should know

The products you will see are not recommendations. You should always confirm the product details with the provider or an adviser.

There are only a few providers who offer open market option annuities.

자료 : 영국의 Money made clear (<http://www.moneymadeclear.org.uk>)

OMO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연금 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이해력과 지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연금급여가 최대 15%나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경한 가입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Harrison et al., 2006). 이는 사업자 변경을 통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단계의 사업자를 지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행동재무론에서 지적하는 타성, 현상 유지 편익, 인식 부족, 사업자 변경을 위한 양식의 복잡성, 전환시기의 지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세계 정책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기여금 및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하고 지급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exempt-tax)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호주는 2007년 모든 퇴직급여에 대해 면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기존 EET 방식에서 EEE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퇴직급여에 대해 통상적인 소득세를 적용하므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과세체계를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비해 과료가 높아져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정책은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EET를 적용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EEt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대문자 T가 아니라 소문자 t를 사용한 것은 적립금의 25%까지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단계에서 일시금 수령 시 최대 25%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EET 체계 내에서 좀 더 관대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잔여 적립금을 연금전환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75세 전까지 허용되는 프로그램인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통상적인 소득세를 적용한다. 만약 퇴직자가 프로그램 인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던 중도에 사망하면 유족은 35% 세금 납부 후 잔여 적립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이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여서 전부 일시금을 허용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25%까지만 부여하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소득세를 적용한다.

미국에서도 일시금과 연금소득 모두 동일하게 수령한 퇴직급여에서 연금 원가를 차감한 후 과세하는 방식을 따른다.

〈표 Ⅲ-8〉 주요국의 연금소득과 일시금에 대한 세제

| 구분 | 연금소득 | 일시금 |
|-----|------------------------------------|-------------------|
| 영국 | 소득세 적용 | 소득세 적용(25%한도 비과세) |
| 스위스 | 소득세 적용 | 소득세 적용 |
| 미국 | 소득세 적용 | 소득세 적용 |
| 호주 | 60세 이상 계층에 대해서는 모든 퇴직급여에 대해 비과세 조치 | |

자료 : Bateman and Piggott(2010), "Too Much Risk to Insure? The Australian(non-) Market for Annuitie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Yoo and Serres(2004),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and the Net Tax Cost Per Unit of Contribution to Tax-Favoured Schem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5. 연금전환 수준

연금전환 수준이 국가마다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연금전환에 대한 정책, 허용하는 지급옵션, 연금상품의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연금전환 정책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연금전환 대상이 된 적립금 중 실제 연금으로 전환된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의무적인 연금전환을 요구하는 칠레와 영국의 연금전환 수준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100%라고 간주할 수 있다⁴³⁾. 물론 영국에서는 적립금의 25%까지 부분 일시금을 허용하고, 칠레에서는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낮아질 것이다. Rocha et al.(2010)의 추정에 의하면 칠레에서 전체 적립금 중 연금으로 전환된 적립금 비중은 7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0%는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나타났다.

43) 영국에서는 75세 도달 전까지 연금이 아닌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75세 이후에는 잔여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금전환 대상이 되는 적립금의 연금전환 비중은 100%로 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의 연금전환 수준은 연금기금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대체로 70(1998년)~90%(2004년)에 달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⁴⁴⁾. 이는 본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연금지급률을 매우 높게 규제하여 연금전환이 일시금 수령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전환 수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금기금에서는 70~90% 수준인데 비해 보험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복수사업자 연금기금(collective funds)에서는 40~50%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적립금 규모와 디폴트 지급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복수사업자 연금기금에 속한 가입자는 저소득 계층이 많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연금전환보다는 일시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도 크고 연금전환을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연금전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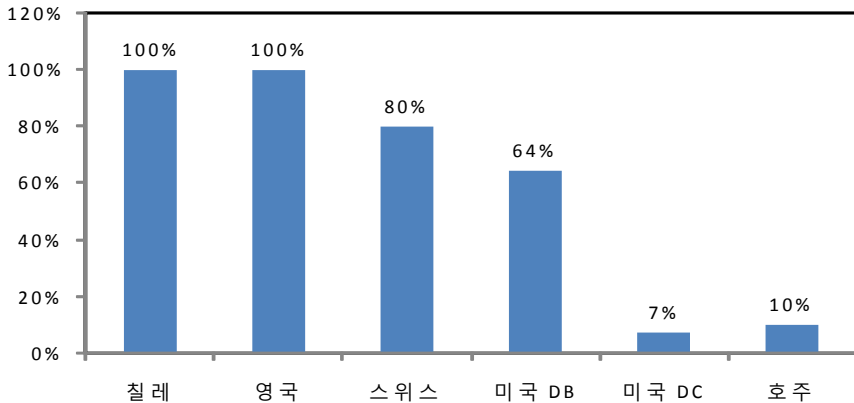
스위스에서는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퇴직연금제도 밖의 공개시장에서 연금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내에서의 연금전환이 공개시장에서의 연금전환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연금전환하면 정부에서 연금지급률을 높은 수준(7.2%)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공개시장보다 훨씬 높은 연금지급을 수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시금 수령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퇴직연금제도 밖에서 개별적으로 연금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은 적립금 기준으로 연금전환한 비중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2000~2003년 평균 퇴직자 기준으로 볼 때 DB와 DC에서 연금전환 옵션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64.4%,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Glickman and Kuehneman, 2006).

호주에서의 연금전환 수준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급여 지출 중 일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축소되고 소득흐름방식

44) 2007년 기준 스위스의 연금지급 규모는 GDP 대비 4.2%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일시금 지급 규모는 GDP 대비 0.82%에 불과하다(Bütler and Ruesch, 2007).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대형 연금기금의 가입자일수록 확정형연금과 프로그램인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일시금 선호는 높은 공적노령연금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수요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Mitchell and Piggott, 2010).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에게 평균 임금의 28%(부부 41%)를 제공할 정도로 보장 수준이 높다. 동 제도는 소득조사 및 자산조사를 통과해야 수령할 수 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산조사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이후 자산조사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는 상대적으로 소득조사에 비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시금을 선호한다.

〈그림 Ⅲ-5〉 주요국의 연금전환 수준



- 주 : 1) 영국과 칠레는 연금전환 대상 적립금 기준
 2) 미국은 적립금 기준이 아니라 퇴직자가 연금옵션을 선택한 비중
 3) 스위스와 호주는 전체 적립금 기준

자료 : HM Treasury(2009), "The UK pension annuities market: structure, trends and innovation"; Glickman and Kuchneman(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ocha et al.(2010), "Designing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Policy Issues, Constraints and Op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6.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

연금가입자 입장에서 연금전환 시 가격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인 MW를 비교할 수 있다. MW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MW가 높을수록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급여가 많기 때문에 (기대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적 측면에서 연금전환 유인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MW 산출을 위해서는 연금급여, 할인율, 생존확률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연금수급자에 대한 경험 데이터가 풍부한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 판매된 연금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비교 자료의 연금급여 데이터를 입수하여 MW를 산출하였다 (Rocha et al., 2010).

연금수급자의 경험생명표와 회사채수익률에 기반하여 MW를 계산하는 것은 연금수급자의 생존율 개선과 그들이 직면하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리스크(특히 보험회사가 주로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를 반영한 것이다⁴⁵⁾.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국민생명표와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회사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도 존재하고 보험회사가 주로 국채에 투자하므로 무위험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연생연금에 대해 연금수급자의 세대생명표(cohort table)⁴⁶⁾와 국채수익률 기준으로 MW를 산출하면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0.9~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1단위를 납입하고 0.9~1.0 단위의 연금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칠레와 스위스는 1.0을 초과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4년 3월 기준 칠레의 물가연동연금은 1.078에 달하며 스위스의 정액연금도 1.152로 높게 나타난다. 스위스에서 특히 높게 산출된 이유는 시중 금리

45) 만약 정부에서 연금지급을 보증한다면 보증하는 수준까지는 무위험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6) 세대생명표에 대한 설명은 <IV장 1-나>를 참조하십시오.

가 낮은 환경에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 연금지급률이 7.2%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스위스, 칠레 및 영국의 MW는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연금전환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미국과 호주의 MW는 낮은 편이다.

〈표 Ⅲ-9〉 주요국의 MW(연생연금)

| 구분 | | 국채수익률 | 회사채수익률 |
|--------|-----------|-------|--------|
| 물가연동연금 | 칠레(2004) | 1.078 | 0.892 |
| | 스위스(2004) | 1.152 | - |
| 정액연금 | 스위스(2000) | 1.025 | - |
| | 영국 | 0.987 | 0.873 |
| | 미국 | 0.929 | 0.841 |
| | 호주 | 0.938 | - |

주 : 스위스의 2000년 MW가 1.025로 낮게 산출된 것은 당시 금리가 높아 할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료 : Rocha and Thorburn(2007), "Developing Annuities Markets: The Experience of Chile", World Bank ; Rocha et al.(2010), "Designing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Policy Issues", Constraints and Op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7. 시사점

국가 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성숙도, 역할, 규제 등이 상이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동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대상 5개국 중 호주와 미국 DC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부 또는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장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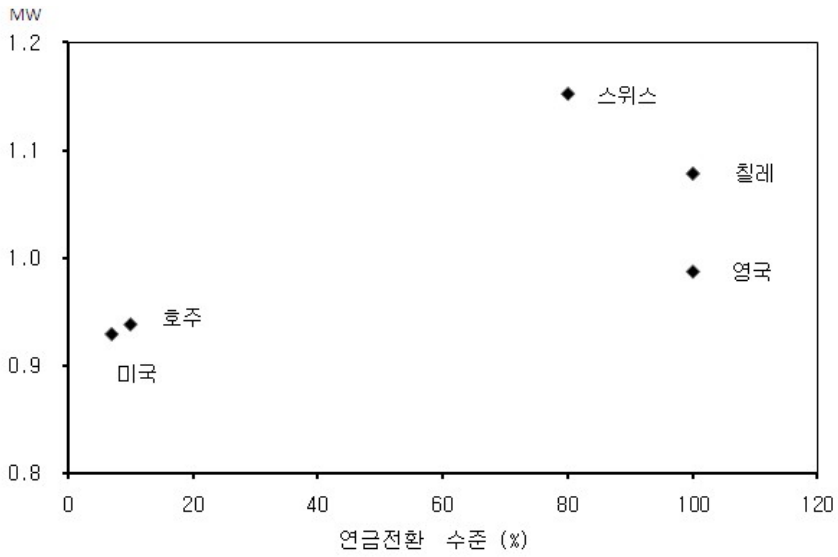
첫째, 의무 연금전환 정책이나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통해 연금전환을 유도 하더라도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연금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분 일시금을 허용한다. 동 비중은 영국에서는 최고 25%로 제한되지만, 스위스에서는 최저 2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공적연금제도의 종신연금 급여 수준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연금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금전환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연금전환 수준은 의무화 여부, 지급옵션 및 가격 규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만약 높은 수준의 연금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지급옵션과 구체적인 상품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위스에서는 디폴트옵션 정책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높은 연금지급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연금전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칠레와 영국에서는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중개기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정보탐색 비용을 낮추어서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는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운영하는 가격비교 시스템이 연금전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연금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MW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위험단체가 확대될수록 역선택리스크가 낮아져 가격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전환에 따른 리스크(annuity risk)를 축소시키기 위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금지급률을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MW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 연금전환 수준과 MW 간 관계



IV. 연금전환 정책설계

연금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첫 번째 판단 사항은 의무화 여부이며 그 다음은 바람직한 지급옵션(상품)에 대한 설계가 될 것이다. 본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에 대한 선택을 개인의 자발성에 전적으로 일임할 경우에 비해 의무화시키면 개선될 수 있는 가격 측면의 경쟁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금전환에 대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급옵션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가. 위험단체 가정

연금전환 수준은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격(연금지급률 또는 MW)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연금지급률을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연금전환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높은 연금지급률을 보장하는 스위스와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킨 칠레 및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기 때문에 역선택리스크로 인해 연금지급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없이 개인이 선택적으로 연금전환하면, 평균보다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 위주로 위험단체가 형성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비용(cost of adverse

selection)을 부과하게 되어 연금지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및 민영연금 모두 성숙단계로 진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 시장과 달리 실제 연금지급을 수령한 가입자에 대한 경험사망률(생존확률)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추정시 이질적인 위험단계로 구성된 2개의 경험생명표 즉, 생명보험회사가 생존·사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생존·사망률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개인연금사망률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들 생명표 작성 기준을 비교하면 <표 IV-1>과 같다. 생명보험회사의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별로 사망할 확률과 기대여명을 예측한 수치이다. 경험생명표는 최근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작성한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제6회 경험생명표는 2003~2005 관찰연도 기초통계에 보정 및 할증 과정을 거쳐 산출되었으며 2009년 10월부터 적용되었다.

생존·사망률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관련 실제 보험가입자 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제6회 경험생명표부터는 개선율을 적용하지 않은 “최선추정치(best estimate) 값”이다. 이에 비해 개인연금사망률은 연금보험상품의 연금개시 이후에 적용하는 사망률로 장래 연금지급 수령자에 대한 사망률을 예측하여 산출한다. 개인연금사망률은 경험통계 자료를 기준 사망률로 두고 국민생명표의 사망률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개선 기간은 기준 연령 40세인 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개시 이후 연령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최소 개선 기간은 40세인 자가 최초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55세에 도달할 때까지인 15년으로 설정한다.

〈표 IV-1〉 경험생명표 작성 기준 비교

| 구분 | 생존·사망률 | 개인연금사망률 |
|-------|--------------------------|--------------------------|
| 기준연도 | 최근 3년 제6회(2003~2005년) | 최근 3년 제6회(2003~2005년) |
| 개선율 | 없음(최선추정치) | 국민생명표에 의한 연평균 개선율 적용 |
| 개선 기간 | 없음 | $\max(x\text{세}-40, 15)$ |

경험생명표는 작성 목적 및 대상 기초통계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연령에서의 기대여명도 달리 추정된다. 55세 이상 인구의 기대여명을 5세 간격으로 비교하면 〈표 IV-2〉와 같다. 55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 개인연금사망률에서의 기대여명 추정치는 생존·사망률 기준 기대여명 추정치에 비해 6.28년이나 높다.

〈표 IV-2〉 경험생명표 간 기대여명 비교

(단위 : 년)

| 구분 | 연령 | 생존·사망률(A) | 개인연금사망률(B) | B - A |
|----|----|-----------|------------|-------|
| 남자 | 55 | 27.02 | 33.30 | 6.28 |
| | 60 | 22.73 | 28.76 | 6.03 |
| | 65 | 18.65 | 24.27 | 5.63 |
| | 70 | 14.85 | 19.91 | 5.06 |
| | 75 | 11.35 | 15.71 | 4.36 |
| | 80 | 8.22 | 11.81 | 3.58 |
| | 85 | 5.62 | 8.35 | 2.74 |
| 여자 | 55 | 32.88 | 38.13 | 5.25 |
| | 60 | 28.18 | 33.29 | 5.11 |
| | 65 | 23.59 | 28.48 | 4.89 |
| | 70 | 19.16 | 23.71 | 4.56 |
| | 75 | 14.97 | 19.06 | 4.08 |
| | 80 | 11.18 | 14.61 | 3.43 |
| | 85 | 7.90 | 10.53 | 2.63 |

본고에서는 생존·사망보험의 위험률을 의무 연금전환 정책 시 형성될 수 있는 연금단체의 생존확률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국민생명표의 위험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 국민보다 양호한 생존확률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의 자발적 판단에 맡길 경우에는 개인연금사망률을 갖는 연금단체가 형성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만약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한다면, 연금단체의 위험률은 의무 연금전환과 자발적 연금전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전환의 정책 효과는 의무 연금전환이 가장 높고, 디폴트 연금전환, 자발적 연금전환 순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에서 형성될 수 있는 연금단체의 생존확률 및 연금지급률은 생존·사망률(의무 연금전환 가정)과 개인연금 사망률(자발적 연금전환 가정)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표 IV-3〉 연금전환 정책과 위험률 가정

| 정책 | 자발적 연금전환 | 디폴트 연금전환 | 의무 연금전환 |
|------------|---|---------------|---|
| 위험단체 및 위험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 가입자 개인연금사망률 가정(a) | a와 b 사이에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존·사망보험 가입자 생존·사망률 가정(b) |
| 연금전환 수준 | 효과 낮음 | ← 정책 효과에 의존 → | 효과 높음 |

나. 연금지급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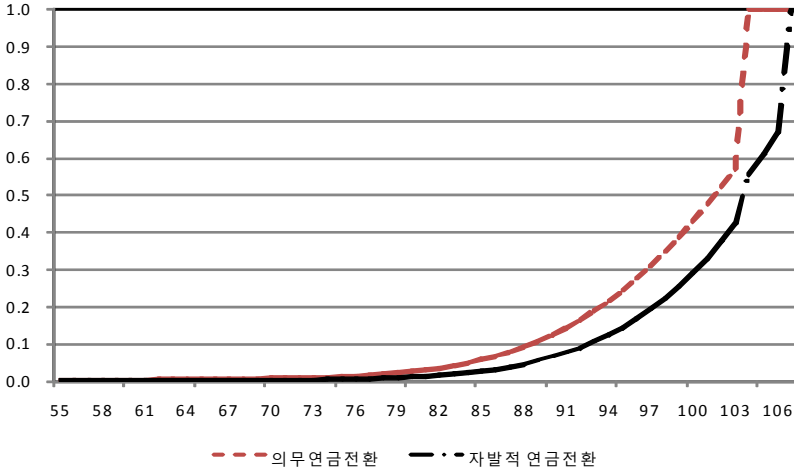
〈그림 IV-1〉은 기간생명표(period table)인 생존·사망률을 세대생명표로 전환⁴⁷⁾한 후 55세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47) '기간생명표'는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사망연령인데 비해 '세대생명표'는 특정연도에 태어난 인구의 실제 사망확률을 측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10년 생명표에서 여자 기대수명이 83세라는 것은 2010년에 태어난 여자들의 평균 사망연령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망률도 상이하며 특히 고연령에서의 사망률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누적사망률은 자발적 연금전환으로 형성된 위험단체가 의무 연금전환 정책으로 형성된 위험단체보다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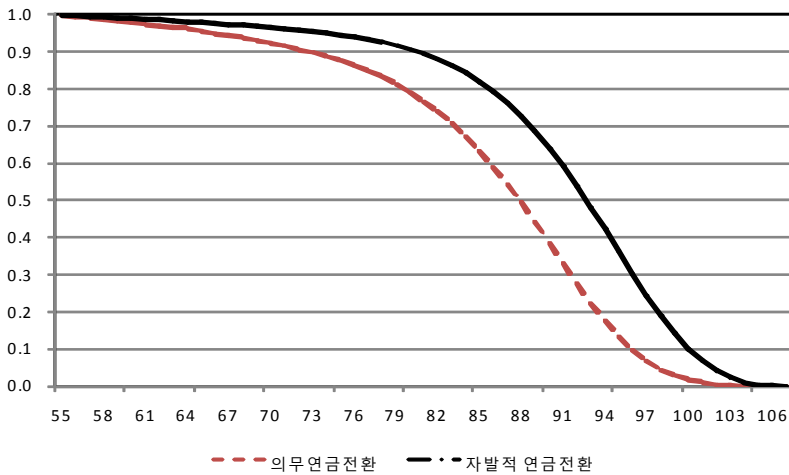
위험단체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연금지급률 산출의 구성 요인인 생존확률 역시 달리 나타난다. 55세까지 생존한 남자가 장래 각 연령에서 생존할 조건부 생존확률은 <그림 IV-2>와 같다. 자발적 연금전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위험단체의 생존확률이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위험단체의 생존확률보다 크게 높다. 예를 들어 55세 남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서는 55%로 추정되는데 비해 자발적 연금전환에 의하면 10%p 높은 65%로 추정된다.

<그림 IV-1> 연금전환 정책과 사망률 가정(55세 남자)



83세라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2010년에 사망한 여자들과 동일한 사망률 특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따른다. 따라서 세대생명표의 기대여명 추정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망률 추세가 변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간생명표의 기대여명 추정치와 일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아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기간생명표의 기대여명은 세대생명표의 기대여명보다 낮다. 따라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연금전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대생명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IV-2〉 연금전환 정책과 생존확률 가정(55세 남자)



이하에서는 〈그림 IV-2〉와 같은 생존확률을 가정한 후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은 계리적으로 공평한 연금가격을 산출하기로 한다. 연금으로 전환하는 적립금 규모(SP)은 1억 원, 연금급여 산출에 필요한 예정이율(i)은 4.8%를 가정한다⁴⁸⁾. 이런 가정 하에 x 세 연령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A)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A = \frac{SP}{\sum_{t=1}^{\omega-x} v^t \times {}_t p_x}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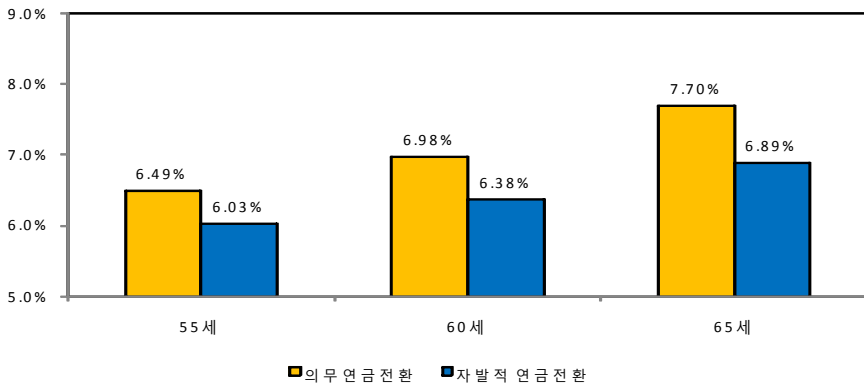
48) 예정이율에 대한 가정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공시기준이율이 2010년 1월~2010년 7월 평균 4.8%임을 감안한 것이다.

(1)식에서 ω 는 최종연령, v 는 $\frac{1}{1+i}$ 이며, ${}_t p_x$ 는 x 세 가입자가 t 년 간 생존할 확률을 세대생명표에 의거하여 추정한 값이다. 위 (1)식에 따라 55세 남자의 연금전환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지급액(A)를 산출하면 연 64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금지급률(γ)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gamma = \frac{A}{SP} = \frac{649\text{만원}}{1\text{억원}} = 6.49\% \quad (2)$$

(2)식과 같은 방식으로 60세, 65세 남자에 대한 연금지급률을 추정하면 <그림 IV-3>과 같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면 자발적 연금전환에 비해 연금지급률이 55세 0.46%p, 60세 0.60%p, 65세 0.81%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여 위험분산이 잘 이루어진 연금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높은 연금지급률 산출이 가능하다. 반면, 자발적 연금전환에 맡겨 두면 역선택리스크가 높아져 연금지급률이 낮아진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험회사가 자발적 연금전환 시장보다 역선택에 대한 비용을 낮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 연금전환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책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IV-3>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연금지급률



주 : 1)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은 계리적으로 공평한 가격산출을 가정함.
 2) 예정이율은 4.8%로 가정함.

위 결과에 의하면, 55세 남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전환할 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하면 연금급여로 603만 원을 수령하는데 비해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면 7.6% 높은 64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의무연금전환 시 연금급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개인의 선택효과(selection effect)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급여 상승 폭(60세 9.4%, 65세 11.8%)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연령에서 사망률 견인(mortality credits)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보다는 낮지만 현재와 같은 자발적 연금전환에 비해서는 연금단체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역선택리스크를 축소시켜 연금지급률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금급여 개선 정도는 정책의 실제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55세 남자의 경우 최저 0%, 최대 7.6%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 초과 소비 추정

위험단체의 구성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크게 다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연금전환으로 인한 효익도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연금상품이 갖는 소비 측면에서의 우위 역시 사망률 견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종신연금의 가격이 가입자 중 일부는 평균적인 기대여명보다 더 짧게 생존하고 일부는 더 오래 생존함을 감안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위험단체 내에는 사망률의 상호보조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가입자의 잔여 연금재원이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는 가입자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55세, 60세, 65세 시점에서 각각 연금전환한다고 가정하고, 3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한 것보다 더 소비할 수 있는 초과 소비 수준은 <표 IV-4>와 같이 추정된다. 55세 남자의 초과 소비는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에게 일임하면 1.31%p 수준에 불과하지만,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1.77%p로 높아질

것이다. 만약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과 소비 수준은 1.77%p 보다는 낮지만 1.31%p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위 결과를 해석하면, 55세 남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전환할 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하면 국고채에 투자한 것보다 연간 131만 원을 더 소비할 수 있는데 비해,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면 연간 177만 원을 더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역선택리스크가 높은 연금단체에 대해 보험회사가 더 낮은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발성에 일임하면 개인들이 연금전환으로 인해 향유할 수 있는 초과 소비 편익이 크게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령별 사망률 견인을 비교해 보면 고연령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률 견인도 높게 추정된다. 이는 소비 측면에서 볼 때 고연령일수록 다른 금융상품보다 종신연금이 더 바람직한 상품임을 의미한다.

〈표 IV-4〉 연금전환 정책과 초과 소비 추정

(단위 : %, %p)

| 대상 | 구분 | 자발적 연금전환(a) | 디폴트 연금전환 | 의무 연금전환(b) |
|--------|------------|-------------|--|------------|
| 55세 남자 | 연금지급률(A) | 6.03 | • a와 b 사이에 존재 • 구체적인 크기는 정책효과에 의존 | 6.49 |
| | 국고채수익률(B) | 4.72 | | 4.72 |
| | 초과 소비(A-B) | 1.31 | | 1.77 |
| 60세 남자 | 연금지급률(A) | 6.38 | | 6.98 |
| | 국고채수익률(B) | 4.72 | | 4.72 |
| | 초과 소비(A-B) | 1.66 | | 2.26 |
| 65세 남자 | 연금지급률(A) | 6.89 | | 7.70 |
| | 국고채수익률(B) | 4.72 | | 4.72 |
| | 초과 소비(A-B) | 2.17 | | 2.98 |

2.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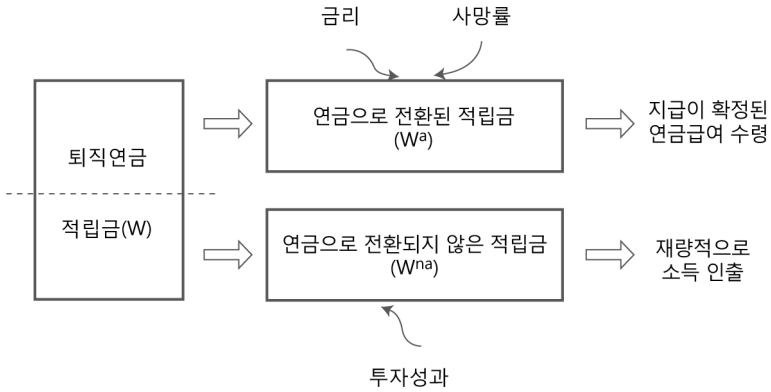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지급옵션은 매우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나 연금전환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강력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방식으로 옵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특약, 고연령거치연금 등 전통적인 연금상품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 부분 연금전환 방식

개인들이 연금전환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은 적립금 전부를 일시에 보험회사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시에 대규모 자산(예: 1억 원)을 전가하고 매월 소액 연금(예: 50만 원)을 수령하므로 불공정한 거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저항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잔여 적립금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연금전환을 의무화한 영국에서도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분 연금전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분 연금전환 방식에 의하면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으로 전환된 부분(W^a)과 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W^{na})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 소득은 연금전환된 부분과 연금전환되지 않은 부분, 즉 재량적 투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한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전환 수준(annuitization ratio)은 특정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IV-4〉 부분 연금전환 방식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미국 Federal Thrift Saving Plan을 들 수 있다. MetLife는 동 연금기금의 독점적인 연금공급자였는데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전부 연금전환 또는 일시금 수령(all or nothing) 방식이었다. 가입자는 퇴직 시점에서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2004년 들어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도입한 결과 적립금의 일부를 연금전환하는 가입자 수가 60%나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적인 연금전환 적립금 규모도 상당히 증대되었다(MetLife, 2010). 이러한 결과는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들도 연금소득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였지만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하는 데 부담을 느껴 연금전환을 주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제시되자 연금전환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교직원 퇴직연금제도인 TIAA-CREF⁴⁹⁾에서도 전부 연금전환하는 비중은 가입자의 17%에 불과하며, 30% 정도는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분 연금전환 방식의 일환으로서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gradual annuitization)도 고려할 수 있다.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은 연금전환 시점을 분산시키므로 적립금 전부를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49)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of America-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

게 부분 연금전환 방식이 된다. 적립금 전부를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시키면 이에 수반되는 금리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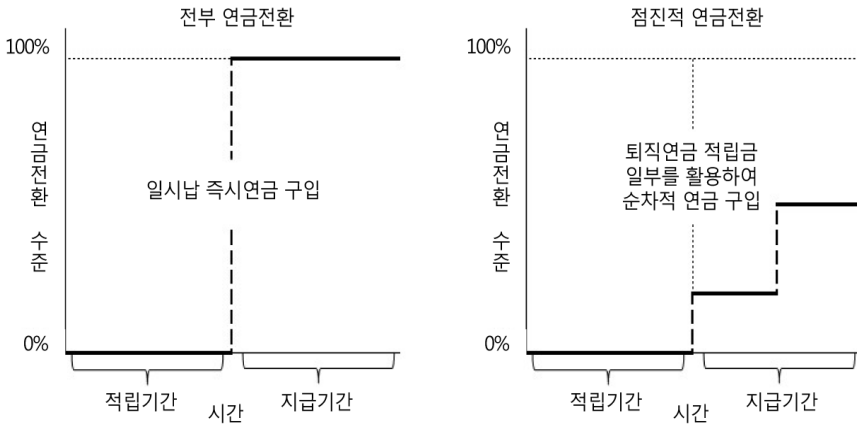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 금리가 하락하자 DC 가입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 가치가 이전 퇴직자들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연금전환 시점을 분산시키는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을 도입하였다. 즉, 프로그램 인출이라는 새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주로 65세) 후에도 75세 시점까지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전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으로 연금전환이 가능한 연령인 55세부터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75세까지 단계적인 연금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점진적 연금전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점진적 연금전환은 자산축적 단계의 적립식 투자(dollar-cost averaging) 효과와 마찬가지로 금리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에 따르면, 노후소득은 연금전환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연금전환하지 않은 적립금에서 인출하는 재량적 소득으로 구성된다. 적립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보험회사로 전가하고, 연금전환하지 않은 적립금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IV-5〉는 일시에 적립금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전부 연금전환”과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연금전환”을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 연금전환 수준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 및 사망률과 같은 연금가입 조건, 연금전환하지 않은 적립금에서 가능한 투자수익률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50)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전통적인 정액연금방식으로 연금전환시킬 경우 사망 시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가 항구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그림 IV-5〉 전부 연금전환과 점진적 연금전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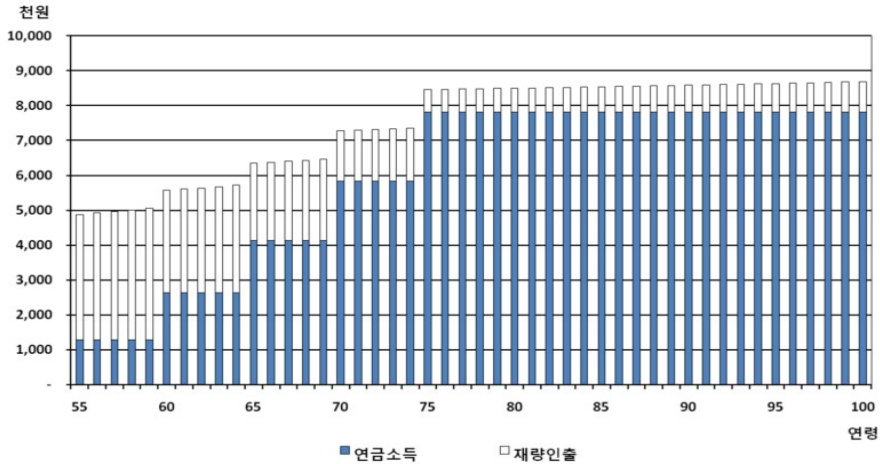


자료 : Pitacco et al.(2009), “Modelling Longevity Dynamics for Pensions and Annuity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pp. 366-368 수정 작성함.

이하에서는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으로 지급옵션을 설계해 보기로 한다. 55세 연령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보유한 남자가 5회(55세, 60세, 65세, 70세 및 75세)에 걸쳐 각각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구입한다고 가정한다. 잔여 적립금은 퇴직자의 개인 계정(프로그램인출)에 남아 투자되는데 동 계정의 투자수익률은 6%, 소비를 위한 인출비율은 4.5%라고 가정한다. 퇴직자가 매 5년마다 단생연금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소득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 + 연금전환하지 않은 잔여 적립금에서 재량적으로 인출하는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전환하면, 연금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연금전환하지 않은 잔여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갖는다. 〈그림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소득 중 연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퇴직 초기에는 낮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전체 소득 중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9세 구간에서는 2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65~69세 구간에서는 65% 수준으로 높아지고 연금전환이 종료되는 75세 시점 이후에는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림 IV-6〉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의 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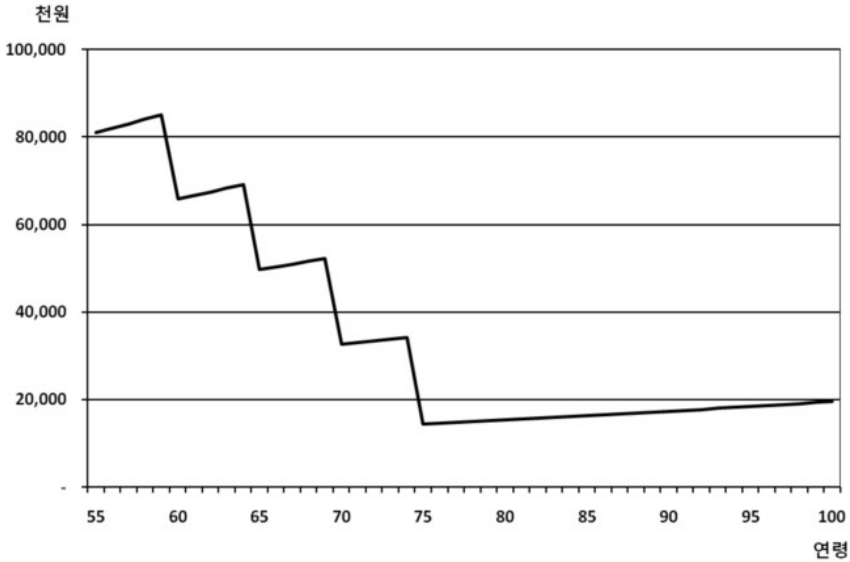


주 :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 투자수익률 6%, 인출률 4.5%, 매 5년마다 2천만 원씩 연금전환할 경우의 연간소득 구성임.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에서는 적립금을 일시에 보험회사로 전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연금전환하지 않은 자산을 활용해서 조기 사망 시 상속 욕구를 충족시키고 후기에는 연금급여를 통해 종신소득의 확보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퇴직 후 주기적 재평가(예: 3년, 5년)를 통해 필요한 소득, 자산 및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연금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림 IV-6〉과 같이 점진적으로 연금전환시키면 경과연도별 개인 계정의 잔여 적립금 추이는 〈그림 IV-7〉과 같이 나타난다. 적립금 추이가 매끄러운 직선 형태가 아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5년 단위로 연금전환에 소요되는 자산 2천만 원이 보험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연금전환이 완료되는 75세 시점에서 1천 5백만 원 정도의 잔여 적립금이 존재한다. 연금전환이 완료된 76세 이후에는 인출률(4.5%)보다 투자수익률(6%)이 더 높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잔여 적립금 규모가 점차 증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IV-7〉 점진적 연금전환 시 잔여 적립금 추이



주 :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 투자수익률 6%, 인출률 4.5%, 매 5년마다 2천만 원씩 연금전환할 경우의 잔여 적립금 추이

위 사례는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투자 환경, 소비 니즈 등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점진적 연금전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IV-7〉과 같이 순차적으로 연금전환하지 않고 적립금을 일시에 5개로 구분하여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퇴직 시점에서 적립금을 5개로 분리하여 각각 2천만 원씩 일시납연금을 5개 구입한다. 첫 번째 일시납 연금은 ‘즉시형’이며 나머지 4개 일시납 연금은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후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거치형’이다. 이들 일시납 거치연금은 일정 이율로 부리되어 급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연금재원으로 사용된다. 개인의 선호, 기대여명 등을 반영하여 5개 연금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연금은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신형이 아닌 5년 확정형으로 수령하며 나머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금은 고연령에서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

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분(점진적) 연금전환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에 적립금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준다. 연금을 구입하는 시점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산 가치와 이자율에 대한 자동적인 평준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거나 금리가 낮을 때 전체 적립금을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준다. 둘째, 연금전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준다. 부분 연금 전환 방식에서는 적립금의 일부(예: 20%, 25%, 30%)만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재량적 인출이 가능하므로 전부 전환에 따른 비가역성(irreversibility)⁵¹⁾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나.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은 전통형연금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해소하고 투자형상품이 갖는 초과 수익을 향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변액연금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1990년대에는 적립단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단계로 접어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급 측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변액연금의 급여는 원본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리나 주식시장이 불리하게 변동하더라도 하방리스크(downside risk)에 대한 보장 기능이 존재한다(〈그림 IV-8〉 참조). 다시 말하면,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뮤추얼 펀드와 유사하지만, 보험의 보장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험상품으로 분류된다(Milevsky and Salisbury, 2006).

51) 비가역성이란 일시에 적립금 전체를 연금으로 전환시키면 그 이후에는 연금전환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IV-8〉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변액연금의 생존 특약으로 부가되는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이하 GLWB로 칭함)은 연금개시 후 종신 동안 약정된 인출금(연금급여)을 보증하는 것으로 200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GLWB는 일반계정에서 운영되는 정액 또는 금리연동형연금과 달리 연금개시 후에도 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실적이 양호하면 인출금액이 높아지거나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 규모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최저 보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연금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의 초과 수익은 향유하면서 하방리스크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 보험회사는 보증수수료를 징수한다.

미국, 유럽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단계에 진입하여 근로기간 중 축적한 자산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시장에서는 GLWB 특약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 생존급부(GLB: Guaranteed Living Benefits, 이하 GLB로 칭함)’ 특약이 부가된 변액연금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자가 동 특약을 채택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표 IV-5〉 참조). GLB는 GLWB를 비롯하여 GMIB⁵²⁾, GMAB⁵³⁾, GMWB⁵⁴⁾, 하이브리드(hybrid) 등이

52) 최저 연금연액보증(GMIB: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으로 연금가입 시점에서 연금전환 시 최저 급여액을 보증하는 옵션이다.

53) 최저 연금적립금보증(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으로 연금개시(전환)시점에서 일정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증하는 옵션이다.

존재하는데 이중 GLWB 채택률이 60~70% 수준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20% 수준에 달하는 GMIB이며 GMAB와 GMWB 채택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

〈표 IV-5〉 미국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및 GLB 유형별 채택률

(단위 : 10억 달러, %)

| 구분 | | 2009. 1/4 | 2009. 2/4 | 2009. 3/4 | 2009. 4/4 | 2010. 1/4 |
|-------------------|-------------|--------------|--------------|--------------|--------------|--------------|
| 수입 보험료 | 신규계약 | 22.9 | 23.6 | 22.8 | 24.7 | 23.9 |
| | GLB 특약부가(A) | 21.2 | 21.1 | 21.2 | 21.1 | 19.8 |
| | GLB 채택(B) | 19.1 | 18.8 | 18.8 | 18.2 | 17.2 |
| GLB 채택률(B/A) | | 90.1 | 89.1 | 88.7 | 86.3 | 86.9 |
| GLB 유형별 채택률 | GLWB | 62 | 66 | 77 | 73 | 74 |
| | GMIB | 32 | 28 | 17 | 20 | 18 |
| | GMAB | 3 | 4 | 3 | 3 | 4 |
| | GMWB | 2 | 2 | 3 | 4 | 4 |
| | 하이브리드 | 1 | 0 | 0 | 0 | 0 |
| 합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 Beatrice(2010), "Annuitization Supremacy",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GLWB 특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출률(또는 연금지급률)은 상품별·회사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5~9.0% 사이에서 결정된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인출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인출률을 높게 설계할 수 있다. GLWB를 전통형연금과 마찬가지로 연생형태로 설계하면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까지 최저보증된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출 기간이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장되므로 단생보다 인출률이 소폭(예: 0.5%p) 낮아진다.

GLWB에서는 연금기준금액(GWB: Guaranteed Withdrawal Balance)⁵⁴⁾이라

54) 최저 중도인출금보증(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으로 보증기간 동안(예: 10년, 15년) 실제 적립금 가치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이다.

55) 최저 지급기준이 되는 연금기준금액은 GWB 이외에도 benefit base, payment base,

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실제 적립금 가치(contract value)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이다. 동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는 연금기준금액과 실제 적립금 가치 중 큰 금액에 인출률(LWP: Lifetime Withdrawal Percentage)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실제 적립금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계약자는 “연금기준금액×인출률”에 해당하는 보증된 인출금액(GWA: Guaranteed Withdrawal Amount)을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최초에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기준금액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료로 1억 원을 납입하고 인출률을 5%로 설정했다면 연금기준금액은 1억 원이 된다. 가입 후 1년 수익률이 -20%여서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자 적립금은 8천만 원으로 하락하지만 연금급여는 연금기준금액으로 산출하므로 계약자는 5백만 원(연금기준금액 1억 원×5%)을 인출할 수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보증된 인출금액 (GWA)}] = [\text{연금기준금액 (GWB)}] \times [\text{인출률 (LWP)}]$$

다만, 계약자가 사전에 약정된 인출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초과 인출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금기준금액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위 예에서 특정 연도에 사전에 약정된 인출률 5%를 5%p 초과한 10% 수준으로 인출하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기준금액이 최초 1억 원의 95% 수준인 9천 5백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인출금액도 475만 원(연금기준금액 9천 5백만 원×5%)으로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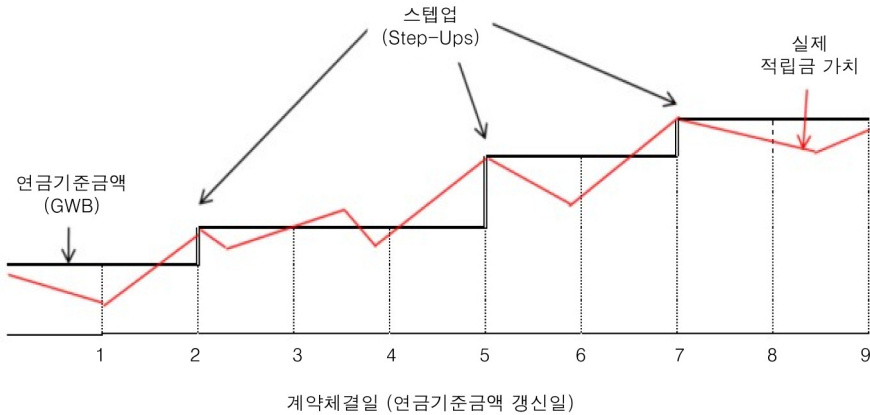
위 식에서 가입자는 연금기준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인출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보험회사는 실제 투자성과가 양호할 경우 최저 보증되는 인출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스텝업(step-up)⁵⁶⁾ 방식으로

income calculation base, protected value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56) 일정 시점(예: 3년, 5년)마다 연금기준금액을 재조정하는 스텝업 방식을 ‘래칫(ratchet)’이라고도 한다. 보험회사는 스텝업 부가 시 보증리스크가 커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GLWB를 설계할 수 있다. 스텝업 방식에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적립금 가치가 상승하여 이전 연금기준금액보다 높아지면 증가된 적립금 가치가 새로운 연금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출금액도 높아진다. 스텝업 재설정 주기는 연간, 3년, 5년 등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한 번 높아진 연금기준금액은 이후 실제 적립금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계속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스텝업과 연금기준금액 갱신



주: 스텝업의 갱신 주기는 연간을 가정함.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시장에 비해 아직까지는 GLWB 활용도가 낮은 편이어서 2010년 8월 말 기준 GLWB를 발행한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 인출률은 연금 개시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A사는 성별과 무관하게 4.0(55~59세)~5.5%(80세 이상) 수준이다. B사는 남자의 인출률을 여자에 비해 0.25%p 높게 설정하였으며 전반적으로 A사에 비해 절대 수준이 높다. 양사 모두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연금기준금액이 일정 연도마다 재설정되는 스텝업(래칭) 기능을 부가하였는데 재설정 주기는 각각 5년(A사)과 3년(B사)이다.

〈표 IV-6〉 국내 보험회사의 GLWB 특약

(단위 : %)

| 구분 | A사 | B사 | |
|-----------|-----------|-----------|--------|
| | 남녀 단일 지급률 | 남자 지급률 | 여자 지급률 |
| 55~59세 | 4.00 | 4.25 | 4.00 |
| 60~64세 | 4.25 | 4.50 | 4.25 |
| 65~69세 | 4.50 | 5.00 | 4.75 |
| 70~74세 | 4.75 | 5.25 | 5.00 |
| 75~79세 | 5.00 | 5.50 | 5.50 |
| 80세 이상 | 5.50 | 6.00 | 6.00 |
| 보증수수료율 | 70bps | 95bps | |
| 스텝업 부가 여부 | 있음(5년 주기) | 있음(3년 주기) | |

자료 : 권용재(2010),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수정 작성함.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보유한 55세 남자가 GLWB를 활용하여 연금전환한다고 가정하자. 사업비⁵⁷⁾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5세 남자 지급률을 〈표 IV-6〉보다 0.25~0.5%p 높은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보증수수료율은 계약자 적립금 대비 70bps를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연금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스텝업 기능은 없다고 가정한다. 변액연금의 투자펀드는 주식 40%, 채권 60%로 구성되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9.7%, 12.2%로 가정한다⁵⁸⁾. 계약자 적립금은 기하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본고에서는 10,000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분포를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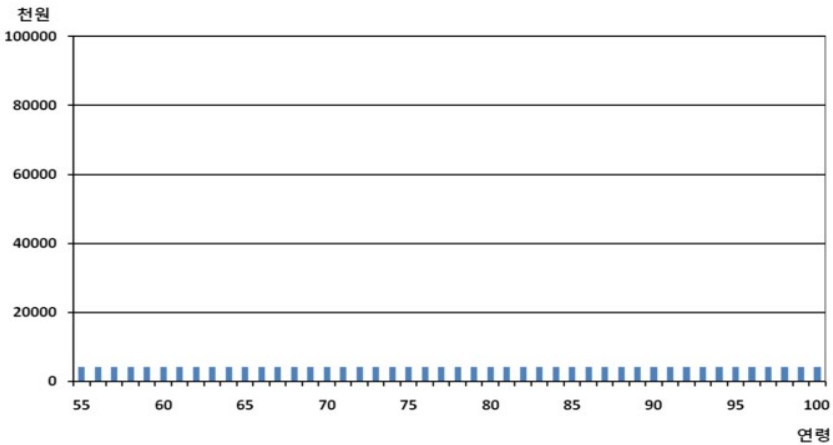
스텝업이 부가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므로 계약자 적립금이 일정 기준금액(예:

57) Pang and Warshawsky(2009)에 의하면 미국 보험회사가 부과하는 변액연금의 평균 사업비(M&E&A: Mortality, Expense risk fee and Administrative charge)는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GMWB 특약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평균 0.6%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징수한다.

58) 우리나라에서 채권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8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KSDA-블룸버그채권 지수 및 KOSPI 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펀드가치가 20% 상승하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연간 최저 인출금액은 1억 원에 4.5%를 곱한 450만 원이 된다. <그림 IV-10>은 실제 투자성과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과 무관하게 GLWB 특약에 의해 계약자가 종신토록 450만 원의 연금급여를 인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V-10> 변액연금 GLWB 연금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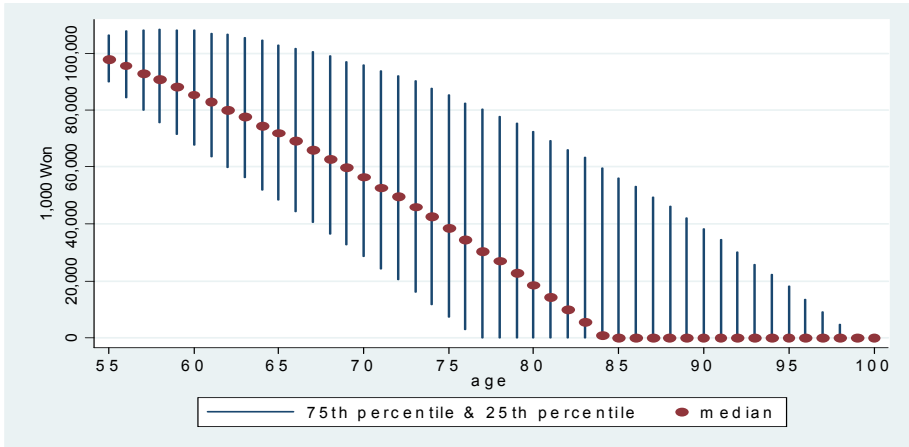
<그림 IV-11>은 계약자 적립금 분포를 추정한 것으로 매기 적립금에서 최저 인출금액(450만 원)과 보증수수료(적립금의 70bps)를 차감하고 투자수익률을 감안한 것이다. 둥근 점으로 표시된 값은 분포의 중앙값(median)이며 스파이크로 표시된 값은 100분위수 중 각각 75번째 값과 25번째 값에 해당한다.

중앙값 추정치에 의하면 계약자 적립금은 85세 시점에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퇴직자가 GLWB 특약이 없는 일반 펀드상품에 가입하였다면 85세 시점에 생존해 있을 경우 소비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그러나 GLWB 특약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납부한 대가로 적립금 가치가 0으로 하락하는 85세 이후에도 사망 시점까지 45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다.

중앙값 기준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 규모를 살펴보면, 60세에는 8천 5백만 원에 달하며, 65세 7천 2백만 원, 70세 5천 6백만 원 수준이

다. 고연령인 75세 및 80세 시점에서도 각각 3천 9백만 원과 1천 9백만 원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그림 IV-11〉 변액연금 GLWB 계약자 적립금 분포



GLWB 특약은 전통형 종신연금과 달리 계약자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해지 등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다. 그러나 위험단체 내 사망률의 상호보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LWB에 의해 보증되는 연금지급물은 전통형 종신연금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토록 연금지급을 지급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확보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종신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GLWB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성고가 저조해서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어도 최저 보증된 금액을 종신토록 인출할 수 있는 보증옵션이라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보증옵션 발행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적립금(또는 연금기준금액) 대비 0.1~1%(10~100bps)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최저 보증수수료 외에 변액연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사업비(M&E&A: Mortality, Expense risk fee and Administrative charge)까지 감안한다면 관련 비용이 퇴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GLWB 특약은 적립금 규모가 너무 소액일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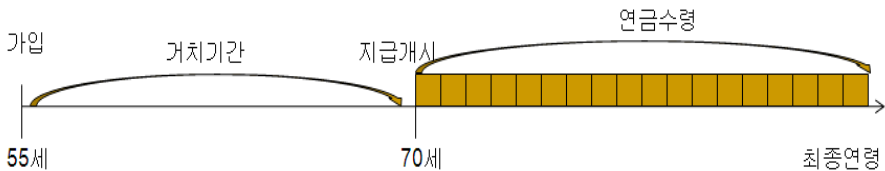
는 적합하지 않고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 바람직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고연령거치연금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DC에서는 DB와 달리 연금전환을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연령거치연금(ALDA: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ong and Webb(2010)은 사망률이 높은 가계에서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보다 고연령에 이르러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기대효용 측면에서 더 바람직함을 보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런 유형의 상품을 401(k)에서 디폴트 지급옵션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전통형 거치연금이나 즉시연금과 달리 퇴직 시점에서 가입한 후 고연령(예: 80세, 8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장기간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생존할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순수 거치연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4년 처음으로 이런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현재 Genworth, New York Life, Hartford, Symmetra Financial, MetLife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IV-12〉 고연령거치연금 구조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연금이 개시되는데 비해 고연령거치연금은 초기 시점에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연령에 이르러서야 지급되는 거치연금

(delayed payout)이다. x 세에 가입한 후 $x + u$ 세부터 개시되는 고연령거치연금의 일시납보험료(SP)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P = \frac{a_{x+u} u P_x}{(1+r)^u}$$

위 식에서 분모는 “거치기간(u)에 대한 할인 요인”이며 분자의 첫 번째 항목은 “ $x + u$ 세에 개시되는 연금현가 요인”이다. 분자의 두 번째 항목은 “ x 세 가입자가 u 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다. 일시납 보험료는 x 세와 $x + u$ 세 사이에 사망하면 어떤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표현된 것이다. 만약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다른 급여를 추가하면 일시납 보험료가 인상되어 동 상품이 갖는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 연령이 높고 거치기간이 길수록 고연령거치연금의 가격은 낮아지는 구조를 갖는다.

아직까지는 동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의 상품을 설계해 보았다. <표 IV-7>은 55세, 60세 남자가 각각 10년, 15년, 20년 경과 후 연금 개시되는 고연령거치연금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일시납 보험료 규모를 즉시연금 보험료와 비교한 것이다.

<표 IV-7>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의 보험료 규모

(단위 : 원)

| 구분 | 연금개시 시점 | 자발적 연금전환(a) | 디폴트 연금전환 | 의무연금 전환(b) |
|--------|---------|-------------|---|------------|
| 55세 남자 | 즉시연금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b 사이에 존재 • 구체적인 크기는 정책 효과에 의존 | 100.0 |
| | 65세 개시 | 51.2 | | 46.3 |
| | 70세 개시 | 34.8 | | 29.0 |
| | 75세 개시 | 22.3 | | 16.6 |
| 60세 남자 | 즉시연금 | 100.0 | | 100.0 |
| | 70세 개시 | 48.0 | | 41.7 |
| | 75세 개시 | 30.8 | | 23.9 |
| | 80세 개시 | 18.0 | | 11.8 |

본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전환 정책에 따라 연금단체를 구성하는 가입자의 위험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동 상품 역시 연금전환 정책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55세 남자가 가입 10년 후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는 즉시연금 대비 51.2%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고연령거치연금 구입에 필요한 보험료 규모는 즉시연금의 46.3%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무연금전환 시 거치기간이 15년과 20년으로 길어지면 즉시연금 대비 필요한 보험료는 수준은 각각 29.0%, 16.6%로 낮아진다. 한편, 연령이 5세 높아져 60세가 되면 의무 연금전환 시 고연령거치연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규모는 41.7%(70세 연금개시), 23.9%(75세 연금개시), 11.8%(80세 연금개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같이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평균적인 기대여명 이상 생존할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지급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자는 적립금의 극히 일부를 활용하여 동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고연령에서의 최저 소득을 확보한 후 잔여 적립금은 연금개시 전까지 생활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하는 데 따른 통제력·유연성·상속 측면에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시에 대규모 적립금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고 연금개시 전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장기간을 거치시키므로 인플레이션리스크에 취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구입과 병행하여 프로그램인출과 같은 투자형상품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시사점

일반적으로 연금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질 때 연금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역선택에 기인한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연금시장에서의 역선택이란 일반 국민보다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연금에 가입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안전할증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금지급률이 낮아진다. 본장에서는 위험단체가 서로 다른 생명표를 기초로 자발적 연금전환과 의무 연금전환 정책 시 가능한 연금지급률을 추정하였다. 55세 남자의 연금지급률은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연금전환하도록 개인에 일임하면 6.03%로 추정되는데 비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이 시행되면 6.4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선택효과로 인해 두 집단 간 평균적인 생존확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의무 연금전환 정책으로 위험단체가 확대되면 연금급여가 연 7.6% 정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 시 연금급여 증가율은 60세 9.4%, 65세 11.8%로 추정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한편,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연금지급률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과 자발적 연금전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구체적 크기는 정책 효과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정책 효과가 커질수록 의무 연금전환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나,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현행 자발적 연금전환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연금전환은 개인에게 노출된 리스크를 보험회사로 전가시켜 소비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전략과 다양한 신규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표 IV-8〉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전환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 요지는 전통적 방식인 적립금 전부를 일시에 정액연금 형태로 전환시키는 전략은 적절하지

못하며 퇴직 후 직면할 수 있는 개인의 다양한 재무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에 대한 통제력과 소득흐름의 유연성 측면에서 볼 때 적립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연금전환 정책이 선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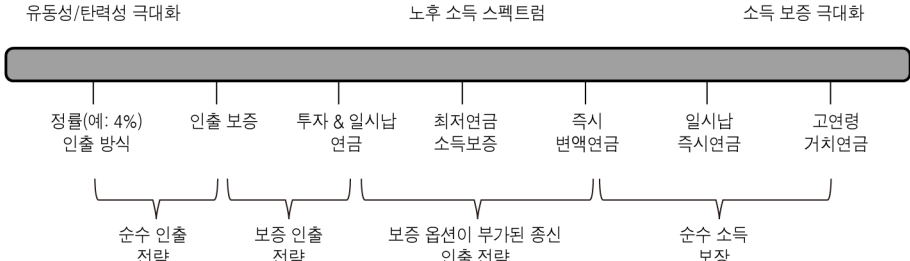
〈표 IV-8〉 연금전환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새로운 접근

| 전통적 인식 | 새로운 접근 |
|--------------------------|--|
| 연금전환은 확실적인 방식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다양한 재무리스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 방식(전부 연금전환 또는 일시금)은 부적절 • 부분 연금전환 방식으로 확실성 축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연금전환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 비가역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형 연금은 유동성이 낮지만 변액연금은 유동성을 제고 시키며 전부·부분 인출에 대한 선택권도 제공 • 적립금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잔여 적립금으로 유동성 니즈 충족 |
| 적립금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 연금전환 시 통제력 상실하지만 부분 연금전환이 가능하면 잔여 적립금에 대한 통제력 유지 가능 |
| 연금가격은 높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사망보험이 조기사망 시 재무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전환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재무적 안전성 제공 → 보장 기능 존재 • 역선택리스크 축소를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
| 급여가 고정되어 인 플레이션에 취약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액 연금은 실질가치 보장 가능 • 전통형 연금에서는 명시적으로 인플레이션 보장 장치가 없으나 물가연동연금은 초기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급여 인상 |

자료 : MetLife(2010), "Respond to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tion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s" 수정 작성함.

부분 연금전환 정책을 도입할 경우 〈그림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순수하게 소득 보장 기능을 극대화시킨 상품으로는 일시납 즉시연금, 고연령거치연금 등이 있으며, 유동성·탄력성을 극대화시킨 순수 인출전략으로는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최저 중도인출금보증 등이 있다. 연금전환 시 전통형부터 투자형까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IV-13〉 부분 연금전환 정책에 활용 가능한 상품



자료 : MetLife(April 30, 2010), "Respond to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tion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s"

본장에서 제시한 변액연금의 GLWB 특약은 종신토록 최저 인출금액을 보증하면서 투자성과가 양호하면 인출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 초과 수익 기회가 존재한다. 전통형연금은 개시 후 중도해지가 불가한데 비해 GLWB를 채택하면 개시 후에도 적립금을 시가 평가하여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GLWB는 전통형 상품에 비해 관련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일정 금액(예: 1억 원) 이상인 퇴직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 소득보장 상품인 고연령거치연금은 대규모 적립금을 일시에 보험회사로 전가시키는 데 수반되는 심리적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상품은 연금지급이 10년 이상 장기간 거치되므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립금의 20~30%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산으로 동 상품을 구입하여 고연령에서 소비 재원을 확보한 후 잔여 적립금을 활용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본장에서 예시한 지급옵션별 특징을 비교하면 〈표 IV-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상품의 투자수익률, 단순성, 관련 수수료, 위험회피도 및 상속욕구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절대적 우위를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급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개인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지급옵션 간 상호 비교

| 구분 | 부분 연금전환* | 변액연금의 GLWB 특약 | 고연령거치연금 (ALDA) |
|-------------|----------|------------------|-------------------|
| 종신소득 확보 | ● | ● | ● |
| 초과 수익 가능 | ● | ● | ○ |
| 인플레이션 헤지 | ● | ● | ○ |
| 수수료 부담 | ● | ○ | ● |
| 단순성(이해 가능성) | ● | ○ | ● |
| 유연성 | ● | ● | ○ |

주: 1) * 연금과 프로그램인출이 결합되어 설계된 것을 가정함.

2) ● : 상, ● : 중, ○ : 하

V.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다층 노후소득보장 관점(multi-pillar approach)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은 공적연금제도와 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표 V-1〉 참조). 보완관계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원칙 및 운영 메커니즘은 공적연금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양자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연금전환 정책도 시장 참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체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공적연금의 특성을 퇴직연금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전환 정책 역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종신연금 형태를 주장할 수 있다.

〈표 V-1〉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

| 구분 | 인식 | 정부 정책 |
|----------|--|--|
| 보완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칙, 메커니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공적 연금과 구분공적연금을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장참여자에게 의사결정 일임하여 시장 메커니즘 촉진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분리하여 정책 수립 |
| 대체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퇴직연금이 공적연금 (부분) 대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적연금 특성을 퇴직연금에도 반영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간 융합 정책 |

우리나라의 연금전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3층 보장 체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적연금제도와 보완관계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양자 간 관계가 보완관계에서 대체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달해야 할 목표 소득대체율(예: 70%)을 충족시키기 위해 축소된 공적연금 부문(예: -10%)을 퇴직연금에서 대체(예: +10%)하도록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로 진입하면, 양자 간 관계가 점차 보완관계를 넘어서 국민연금 축소 분을 퇴직연금에서 벌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급단계에 대한 정부 정책도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자 간 융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소득의 충분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여서 퇴직연금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예정자의 예상 연금급여는 월 33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석상훈 외, 2009). 또한, 2007년 7월 급여 인하 조치로 인해 2028년 수급자부터는 3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최종 소득 대비 2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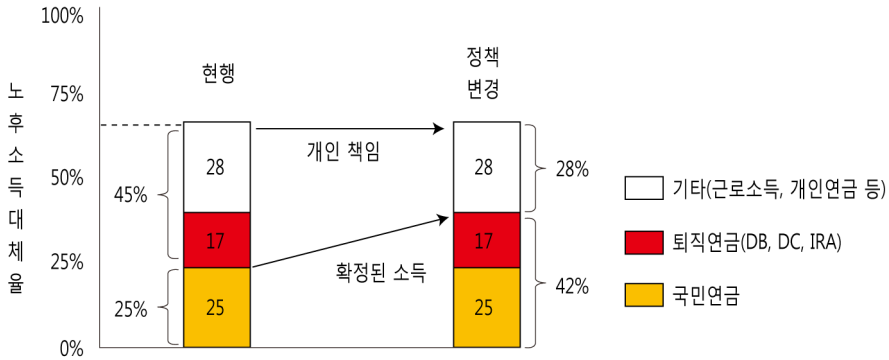
〈그림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 적정 소득대체율을 70% 수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한다면,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은 25%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45%의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적립금, 개인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및 근로소득 등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만약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퇴직연금 적립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을 17%⁶⁰⁾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9) 임병인·강성호(2005)가 추정한 국민연금의 최종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에 근거한 것이다.

60) 연금수급 자격은 국민연금이 60세인데 비해 퇴직연금은 55세이다. 수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로 가정하였다. DB제도에 30세 가입하여 60세 퇴직하는 남자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최초 임금수준 월 100만 원, 임금상승률은 연간 5%로 가정한다. 30년 후 월 임금 = 100만 원 \times (1.05)³⁰ = 432만 원, 퇴직일시금 = 432만 원 \times 30년 = 1억 2,966만 원 연금전환 시 월 연금급여 = (1억 2,966만 원 \times 6.98%) / 12월 = 75만 원, 소득대체율 = 75만 원 / 432만 원 = 17.45%

이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아지고,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소득대체율은 28%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림 V-1〉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대체율 구성



주 :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남자 가입자에 대한 DB 적립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연금지급률은 〈IV장 1절〉에서 산출된 60세 남자 기준 6.98%를 사용함.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불충분성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개인은 일시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연금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할 경우 일시금에 대한 강한 선호, 근시안성, 타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전환 비중은 매우 낮다. 우리와 같은 미국 DC제도에서 연금으로 전환시킨 적립금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다(Mitchell and Drinkwater, 2006). 또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기금형(trust fund type)이 아닌 계약형(contract type) 지배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으며, 연금전환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이 거의 없고, 사용자에게 연금전환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

한편,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매년(월) 기여금과 실제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연금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일시금제도의 잔재가 매우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실행이 결코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실행을 미루는 것보다는 일시금 수령 현상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새로운 체제(regime)로 이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연금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3가지 제안(의무화, 디폴트옵션,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을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제1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를 위한 제1안으로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이 개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회 후생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특정 유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과도한 보험요율 인상⁶¹⁾이 예상되므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상호 연계되어 적정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이를 강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므로 신중

61) 부과방식으로 이행하면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2065년경 2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가 넘는 보험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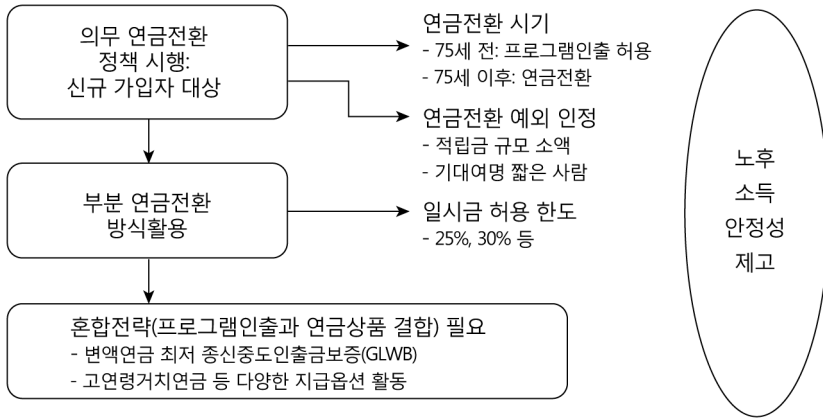
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해 주고,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연금전환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디폴트 옵션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본고에서는 연금전환의 대원칙으로서 의무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전환 정책의 대원칙이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V-2>와 같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Ⅲ장 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전환 대상이 되는 적립금 모두가 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보다 연금급여를 7.6%(55세 남자)~11.8%(65세 남자) 정도 높일 수 있다.

동 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연금전환이 최적이지 아닌 계층에 대해서는 연금 과잉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반드시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적립금 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 소액이어서 연금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전환의 실익이 낮은 경우와 증병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서 기대여명이 짧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의무 연금전환에서 제외되는 적립금 규모는 영국이 17,500(원화 3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금액(예: 2천만 원)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연금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개인별 니즈를 반영하여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퇴직 후 특정 연령(예: 70세, 75세, 80세 등) 도달 전까지는 개인계좌(프로그램인출 방식)를 유지하면서 재량적인 투자와 인출을 허용하고, 고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서 잔여 적립금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V-2〉 제1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



나.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정책 효과가 가장 높다는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행하는 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디폴트 상태가 적립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는 일시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근로자들은 퇴직급여를 “자신”의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약을 가한다면 많은 저항을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연금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검토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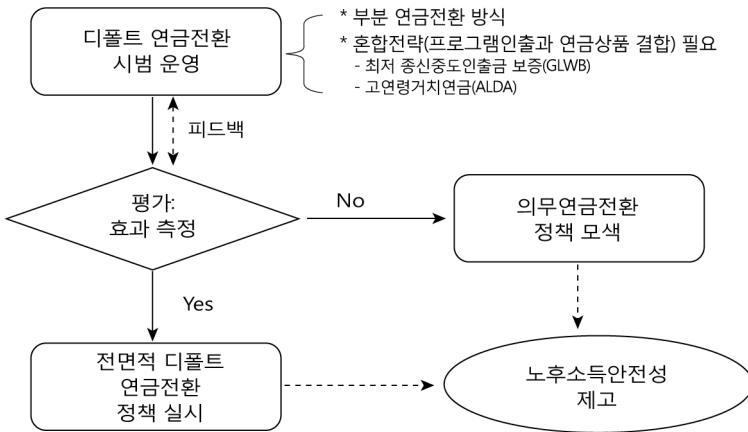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효과는 선행연구와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 연금전환 정책보다는 낮지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선 시범사업장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안으로 제시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V-3〉과 같다. 먼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중 1인당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예: 5천만 원) 이상이며, 50대 이상 퇴직에 임박한 가입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한다. 업종별 대표 시범사업장에 대해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한 후 일정 기간(예: 5년 정도) 성과를 평가한다⁶²⁾. 만약 시범사업장의 연금전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선되고, 동일 조건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본격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⁶³⁾.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드백 결과를 통해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으로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3〉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62)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과 달리 일시금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라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시금 선택에 대한 유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예: 25%, 30%)까지만 일시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 과세하는 EET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63) 디폴트 연금전환을 요구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24개월)을 두고 동 기간 내에 계약자가 해지를 원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다.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마지막 제3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은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되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다. II 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에 비해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연금전환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만약 정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한 채 연금전환을 유도하고자 또는 적어도 연금전환을 저해하지 않고자 한다면 세제 측면의 개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금전환에 비해 일시금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유기적 정책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문이다.

우리나라도 <III 장 4절>에서 살펴본 주요국 사례와 같이 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일시금 수령은 지급단계에서 수령하는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은 동일하므로 일시금과 연금 간 과세체계를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금소득에 비해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높게 부여된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만 존재할 때 세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를 대체한다고 본다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에 대해서는 단일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형성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연금이나 프로그램인출과 같이 소득흐름방식으로 수령하든 동일하게 개인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대폭 축소시키도록 한다.

만약,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를 근시일 내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전환된 소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 대한 면세구간 상향 조정, 낮은 세율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인 유인 정책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적립금의 일정 비율만큼 매칭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매칭펀드의 재원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칭 기여율이 5%라면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전환되는 재원 규모가 1억 원이 아니라 1억 5백만 원으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표 V-2〉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
- 일시금과 연금에 대해 단일 세제 적용
 -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폐지
-
- 퇴직소득세 유지 시, 연금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연금소득(공적연금 포함)에 대한 면세기간 상향 조정
 -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은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
 - 연금전환 적립금에 대해 매칭펀드 지원
-

라. 상호 비교

본고에서 제안한 3가지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비교하면 〈표 V-3〉과 같다.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의무화 방안(제1안)으로 정책 효과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반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연금전환에 소요되는 사업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도 존재한다.

디폴트옵션 정책(제2안)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행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정책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가장 소극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제3안(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정책)은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친숙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외국 사례를 통해 볼 때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하는 유인만으로는 연금전환 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표 V-3〉 각 방안 간 비교

| 방안 | 장점 | 단점 |
|--------------------------|--|--|
| 제1안: 의무 연금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효과 가장 확실: 연금전환 수준 100% • 역선택 축소되어 가격경쟁력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택권 제한 • 사업비(수수료) 부담 •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 존재 |
| 제2안: 디폴트 연금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택권 존중 • 정책 시행 비용 낮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효과 불확실 • 효과 낮으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연금전환 수준이 낮아지는 악순환 |
| 제3안: 현행 방식에서 세제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방식 유지하므로 친숙도 높음 • 제도 변경 비용 거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개편만으로는 연금 선택 비중을 높이지 못함 (예: 미국 DC) |

2. 정책 제안

지급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은 일시금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일시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IV장 2절에서 예시한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허용 가능한 일시금 한도(예: 25%, 30%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수준을 추정해야 한다. 가계의 재무상태와 선호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최적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에 임박한 개인들의 필수지출 금액⁶⁴⁾에서 이미 확보된 소득 수준을 차감한 소득부족분(monthly income gap)을 계산해야 한다. 이미 확보된 월 소득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지급이 확정된 소득을 의미한다. 양자 간 차이인 소득 부족분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통해 충당한다고 본다. 만약 평균적인 국민이 소득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75%(70%)를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 허용 가능한 일시금 한도는 25%(30%)가 될 것이다.

〈그림 V-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30년 DB 가입자가 60세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면 17% 정도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시금 허용 한도가 높게 산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분 연금전환 정책을 실시하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일시금 허용 한도가 각각 25%, 30%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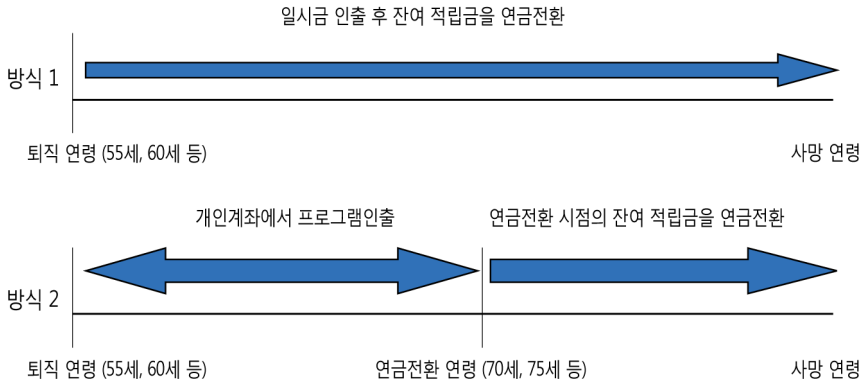
부분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할 경우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은 〈그림 IV-13〉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전통형 연금부터 유연성을 극대화한 투자형 상품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또한, 개별 지급방식과 상품은 각기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복수의 상품을 결합한 혼합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시점에서 허용 한도 내(예: 0~30%)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후 잔여 적립금(70~100%)으로 연금전환 할 수 있다(〈그림 V-4〉 방식 1).

만약 재량적인 투자 및 인출에 대한 욕구가 높다면 연금전환을 미룰 수 있는 최대 연령(예: 70세, 75세, 80세)까지 개인계좌에서 프로그램인출 방식으로 관리한 후 연금전환 시점에서 잔여 적립금으로 연금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그림 V-4〉 방식 2). 다만, 프로그램인출을 활용할 경우에 초기 과다 인출 시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런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기대여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대 인출금액을 제한하도록 한다.

64) 필수지출 금액에는 주거, 음식, 교통, 의료비 등 기본 항목이 포함된다.

65) 개인퇴직계좌에 해당하는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s)을 의미한다. 리스터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1년에는 일시금 허용 한도가 40%에 달하였으나 이후 연금전환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2005년에는 30%로 축소되었다.

〈그림 V-4〉 혼합전략을 활용한 부분 연금전환 방식



3.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안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금전환 시장을 둘러싼 하부 구조가 튼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개인들이 종신소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가. 지급방식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개인이 지급옵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옵션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별 적립금(DC) 또는 가입자 단체의 적립금(DB) 규모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연금전환 관련 정보 제공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으로 명시하며 급여의 종류로 일시금과 연금을 포함하도록 한다. 연금수급 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55세 이상부터 가능

하다고 명시한다.

DB에서는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표준적인 급여액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표준가입자를 선정한 후 표준가입자에 대한 근속기간, 평균 임금, 표준급여액 등을 산출하여 그 내용을 안내한다. 여기서 표준급여액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일시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지급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퇴직급여를 대상인원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급 내역을 산출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 종류별 지급 내역은 총지급액 중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이다. DC에서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 현황, 운용 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교육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적립단계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지급단계 관련 내용으로는 가입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이 유일하다.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인들이 연금전환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수급을 통해 노후소득을 조달하는 연금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일반인들이 종신동안 확정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가치(insurance value)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적립단계에서부터 종신연금, 프로그램인출, 일시금 등 각각의 지급방식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평가 시점의 적립금 규모뿐만 아니라 노후소득을 예시(retirement income projections)하는 명세서도 함께 발송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기여율 수준으로 계속 기여하면 퇴직 시점에서 가능한 연금급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한다⁶⁶⁾. 이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개인들이 퇴직 시점에서

66) Mathew Greenwald & Associates(2010)이 45~65세 미국 DC 가입자 75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0. 3. 26~3. 31이고, 최저 적립금이 4만

연금전환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모범규준(model disclosure)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소득 관련 예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에서 공식기구(Board for Actuarial Standards)를 설립하고, 동 기구에서 생명표 선정, 이자율 가정 등 연금지급률에 대한 표준가정(standardized assumptions)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률 산출을 위한 사망률 가정은 “경험위험률”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할인·할증해서 사용하도록 제시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국고채수익률 + 스프레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적인 연금지급률은 연금전환에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감안하여 제시하도록 한다⁶⁷⁾.

더 나아가 통합 연금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에서 수령 가능한 연금급여 정보도 포함해서 노후준비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연금수령 시점에서 예상되는 연금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퇴직연금제도로 확대해서 퇴직연금 급여명세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개인들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형태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월 기준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아울러서 예상되는 총 연금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예상연금 규모가 자신의 목표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면, 추가 기여를 할 수도 있다⁶⁸⁾. 구체적 실행 방법은

달러 이상이며, 조사대상은 DB에서 수령하는 급여가 없는 사람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90%가 현재 적립금을 65세부터 수령 가능한 월 확정소득 개념으로 전환시켜 제시하는 것은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61% 정도는 월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7) 영국의 Board For Actuarial Standards에서는 사업비를 4% 수준으로 가정한다.

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도입되면 DC뿐만 아니라 DB에서도 추가 기여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적연금 정보를 받아 자사의 정보와 취합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연금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지급단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평균적인 기대여명보다는 극단적으로 오래 생존할 리스크(tail survival risk)를 강조함으로써 가입자가 장수리스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역시 정보 제공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담기구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에서 관련 조직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⁶⁹⁾. 교육 내용에는 기여율 가정,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 필요한 연금전환 수준 결정, 연금지급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 분야에서 교육의 효과는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설계 및 평가는 행동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면 장래여명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장받으려는 성향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무리스크, 수익률, 손익분석, 유동성 등 “투자 관점(investment frame)”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연금전환 유인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생애 소비에 중점을 둔 “소비 관점(consumption frame)”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이다.

69) 영국 퇴직연금청(NAPF)에서는 재무상담팀(Pension Force)을 출범시켜 사업장 대상으로 무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V-4〉 정보 제공 및 교육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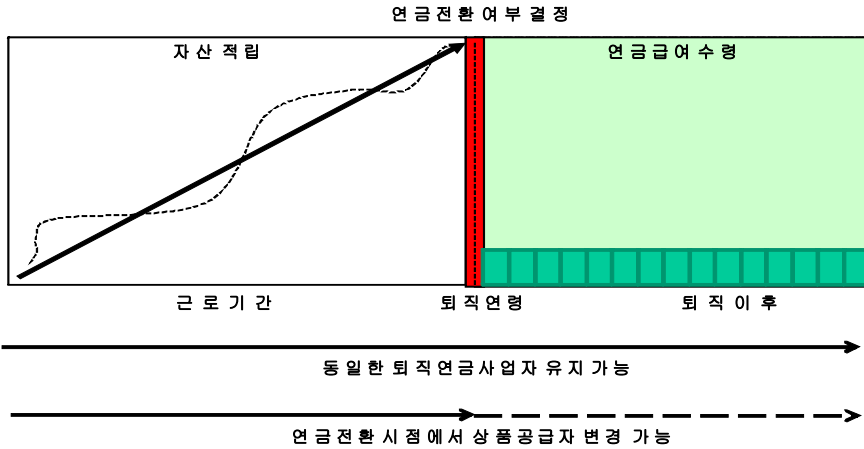
| 현행 | 개선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제도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통지 -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 급여종류(일시금, 연금)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 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DC제도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 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 중요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로 표준적인 모범규준 제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 다양한 지급옵션 및 부분 연금전환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연금, 프로그램인출, 일시금 등에 대한 설명 및 장단점 비교 - 혼합전략 활용 필요성 • 현재 적립금 및 퇴직 시점의 적립금을 연금 급여로 전환하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시점의 적립금 수준 산출 - 퇴직 시점에서 적립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 예시 • 통합 연금정보 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연금을 통합한 연금급여 정보 제공 • 근로기간 동안 지급방식, 장수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연령에서 생존확률에 대한 교육 강화 -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 중점 • 연금전환 관련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연금전환 수준 결정 - 연금지급률(사망률, 예정이율, 사업비 등) |

나.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에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개인들의 연금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연금전환 과정에서 개인들은 적립단계와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림 V-5〉 참조). 따라서 퇴직 예정자들

에게는 연금전환 시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림 V-5〉 연금전환 시점의 사업자 선택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고수하는 방식은 연금전환 특약을 선택함으로써 적립단계의 사업자가 계속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체결하는 자산관리보험 약관에 연금전환 특약을 부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금전환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며 연금전환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적립단계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또는 IRA로 이전)한 후 공개시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의 연령, 성, 적립금 규모,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규로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에 대한 신계약비는 회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납입보험료의 5% 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예정이율, 사망률, 유지비 등)이 동일하다면 연금지급률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 연금전환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칠레와 영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매수수료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직접적인 판매수수료 규제는 두고 있지 않지만 가격비교 시스템을 통해 매우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자 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브로커를 중심으로 가격비교 사이트(annuity mart)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에서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브로커와 퇴직연금사업자⁷⁰⁾를 중심으로 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주체들이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로부터 자사 상품을 제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비교가 어렵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해당 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되는 모든 상품을 일시에 조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가격비교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제공하는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영국보험자협회인 ABI(2005)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연금공급자간 가격비교 시 공적기관인 FSA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격비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의사결

70) 예를 들어 Fidelity Web이 해당된다.

정 과정에 입각하여 연금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기타 자산 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적립금 비중(예: 70%, 75%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의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소비패턴, 위험회피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연금상품 유형(연생·단생, 정액·체증·변액, 즉시연금·거치연금 등)을 선택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유형을 선택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사업자간 가격 수준을 비교한 후 최적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5〉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 현행 | 개선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관련 가격비교 서비스 없음 •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공개시장에서 연금전환 시 제한적 가격비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회사 사이트에서 자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에 대한 연금급여 정보 제공 - 독립판매채널(GA)을 중심으로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하나 자사와 제휴 관계인 상품으로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중앙 집중적인 가격비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전환 수준(예: 70%, 75% 등) 선택 - 2단계: 적합한 연금상품 선정 - 3단계: 선정된 연금상품에 대해 사업자 간 가격비교 후 최적 조건 선택 |

Ⅵ.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7.6%에서 2050년에는 72.0%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그 결과 노후소득 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개인 책임의 상당 부문은 근로기간 중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될 것이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이 축적된 자산을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연금전환 필요성,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정부 또는 연금기금에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의무 연금전환과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칠레,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연금전환 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스위스에서는 연금기금에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연금지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7.2%)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연금전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구체적으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할 때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전환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일임하는 미국 DC와 호주에서는 연금전환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불충분한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통해 보완(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시금 인출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연금전환의 대원칙 및 제1안으로서 정책 효과가 가장 높은 의무 연금전환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불충분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화 정책이 요구된다. 적용 대상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 한정한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서는 연금전환이 최적이지 아닌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기대여명이 매우 짧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제2안으로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색할 수 있는 차선택이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과 달리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도입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의무화 방안보다 정책 효과가 낮고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연금전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3안은 현 상태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의무화나 디폴트옵션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가장 소극적 방안이다. 따라서 연금전환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전부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동 방식은 적립

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연금전환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과 연금 과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것이다. 개별 지급방식과 상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이들 상품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분 연금전환 방식은 프로그램인출과 연금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혼합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 관련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입자들이 종신소득흐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어 2010년 12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29조 원을 초과하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이르는 등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급단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제도의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연금전환 정책을 위해 의무 연금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구체적 대안으로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적정 연금전환 수준 및 연령, 예외 조치 요건, 개인들의 지급옵션에 대한 구체적 선택 행위 분석 등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7.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행정해석 모음집」
_____ (2009. 11. 3), 「퇴직연금업무처리 지침」
_____ (2010. 6.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____ (2010. 7.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_____ (2010. 11.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권용재(2010. 8. 23),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제95호, 보험연구원
- 김원섭·백인립·김보영(2009. 12), 「공·사 연금 정보연계의 타당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 2009-3, NPS 국민연금연구원
- 金·張 법률사무소(2010. 4. 30), 「보험세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김진수·김재진(2007. 12),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문형표 편(2007),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Ⅰ)」, 한국개발연구원
- 방하남·강석훈·신동균·안중범·이정우·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 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보험개발원(2008. 9),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석상훈·최옥금·송현주·권태구·김해미·정경화(2009),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직업이력 및 연금이력 실태-국민노후보장패널 제2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조사보고서 2009-1, NPS국민연금연구원
- 이경룡(2009),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 이경희(2009),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정책보고서 2009-2, 보험연구원
- 이경희·최이섭(2010. 3. 2), 「행동채무론 관점에서 본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시사점」, 『KiRi Weekly』 제70호, 보험연구원
- 이경희(2010. 10. 4),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정책-칠레와

영국의 비교견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KiRi Weekly』 제100호, 보험연구원
 임병인·강성호(2005),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탈러·선스타인(2008), 『넛지』, 리더스북
 통계청(2009a), 『2009 고령자통계』
 _____(2009b), 『사회조사보고서』
 _____(2010), 『사회조사보고서』

ABI(February 2005), *The Pension annuity market: consumer perceptions*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November 2001), “Annuitization of Social
 Security Individual Accounts”, *Issue Brief*
 Ameriks, J., Veres, R., and Warshawsky, M.(December 2001), “Making
 Retirement Income Last a Lifetim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Vol.14, No.12
 Ameriks, J. and Yakoboski, P.(Fourth Quarter 2003), “Reducing Retirement
 Income Risks: The Role of Annuitization”, *Benefit Quarterly*
 Antolin, P., Pugh, C., and Stewart F.(September 2008), “Forms of Benefit
 Payment at Retirement”, *OECD Working Paper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26
 Aura, S.(2001), “Does the Balance of Power Within a Family Matter? The Case
 of the Retirement Equity Act”, *IGIER Working Paper*, No.202 Milan,
 Italy: Innocenzo Gasparini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Bateman, H. and Piggott, J.(September 2010), “Too Much Risk to Insure? The
 Australian (non-) Market for Annuitie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No.2010-18
 Beatrice, D.(Spring 2010), “Annuitization Supremacy”,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 _____ (First Quarter 2010), *Variable Annuity Guaranteed Living Benefit Election Tracking Survey*, LIMRA
- Beshears, J., Choi, J., Laibson, D., and Madrian, B. (February 2006), “The Importance of Default Options for Retirement Saving Outcome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No.12009
- Boardman, T. (2006), “Annuitization Lessons From the UK: Money-Back Annuities and Other Development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73, No.4
- Brown, J. (August 7, 2009), *Automatic Lifetime Income as a Path to Retirement Income Security*, Prepared for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 _____ (2008), “Financial Education and Annuities”, *OECD Journal: General Papers*, Vol.2008/3
(www.oecd.org/dataoecd/38/0/44509379.pdf)
- Brown, J., Kling, J., Mullainathan, S., Wiens, G., and Wrobel, M. (November 2008), “Framing, Reference Points, and Preferences for Life Annuities”, *Research Brief*, Retirement Security Institute
- Büttler M. and Ruesch, M. (December 2007), “Annuities in Switzerlan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4438,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Büttler M. and Teppa, F. (2005), “Should You Take a Lump-Sum or Annuitize?”, *Swiss Pension Funds Working Papers*
- _____ (1991),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0
- Choi, J., Laibson, D., Madrian, B., and Metrick, A. (January 2005), “Optimal Defaults and Active Decis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11074
- Drinkwater, M. (2006), “Liquidity and the Value of Annuitization”, Strategic

- Issues Series, LIMRA
- Fidelity(2007), "A Report on Corporate Defined Contribution Plans", *Building Futures Volume VIII*
-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s -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ong, G. and Webb, A.(February 2010), "Evaluating the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An annuity people might actually buy",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Vol.46, Issue 1
- Harrison, D., Byrne, A., and Blake, D.(March 2006), *Annuities & Accessibility-How the industry can empower consumers to make rational choices*, Pension Institute
- HM Treasury(January 2009), *The UK pension annuities market: structure, trends and innovation*
- _____ (November 2008), *Open Market Option: an update on the review*
- Holden, K. and Nicholson, S.(1998), "Selection of a joint-and-survivor pension", *IRP Discussion Paper*, No.117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Horneff, W., Maurer, R., Mitchell, O., and Dus, I.(2008), "Following the Rules: Integrating Asset Allocation and Annuitization in Retirement Portfolio",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Vol.42
- Hu, W-Y and Scott, J.(2007), "Behavioral Obstacles to the Annuity Market",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No.2007-10
- IOPS(May 2008),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The Chilean and UK experience", *Working Paper*, No.7
- Lee, K. and Sung, J.(December 2010), "A New Korean Defined Contribution Plan Framework to Enhance Retirement Income Security: Combining

- Lifecycle Funds with Compulsory Annuitization”,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Vol.35, Supplement 1
- Johnson, R., Uccello, C., and Goldwyn, J.(2003), “Single Life vs. Joint and Survivor Pension Payout Options: How Do Married Retirees Choose?”, Final Report to the Society of Actuaries and the Actuarial Foundatio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Kessler, E.(August 2009), “Constructing New Retirement Systems: Choosing between Insurance and Investment, Choice and Default”,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No.2009-10
- LIMRA(2009), *The Positioning of Assets in Retirement*
- Lusardi, A. and Mitchell, O.(January 2007a),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reparedn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Business Economics*
- _____ (2007b),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54, No.1
- Madrian, B. and Shea, D.(2001),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the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116
- MetLife(April 30, 2010), *Respond to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tion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s*
- _____ (2009), *Study of Employee Benefits Trends-Finding from the national survey of employers and employees*, Seventh Annual
- Milevsky, M. and Salisbury, T.(2006), “Financial valuation of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s”,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38
- Mitchell, J. and Drinkwater, M.(2006), *Behavioral Economics and Annuitization*, LIMRA International

- Mitchell, O. and Piggott, J.(September 2010),“ Turning Wealth into Lifetime Income: The Challenge Ahead”,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s*, No.2010-13, The Wharton School
- Mitchell, O. and Ruiz, J.(August 2009), “Pension Payouts in Chile: Past,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s*, No.2009-07, The Wharton School
- Montminy, J.(2009), *Immediate Annuities*, LIMRA
- Mottola, G. and Utkus, S.(November 2007), “Lump Sum or Annuity? An Analysis of Choice in DB Pension Payouts”, Vanguard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Vol.30
- Munell, A. and Soto, M.(2005), “What Replacement Rates Do Households Actually Experience in Retiremen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s*, No.2005-10, Boston College
-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October 2008), “UK Pensions Regulations Compared”, *NAPF Research Report*
- OECD(2010), *Pensions at a Glance 2009*
- Orth, B.(March 31-April 2 2004), “Managing Longevity Risk in U.S. Retirement Plans through Mandatory Annuitization”, Presented at Managing Retirement Assets Symposium
- Pang, G. and Warshawsky, M.(2009), “Comparing Strategies for Retirement Wealth Management: Mutual Funds and Annuities”,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Vol.22, No.8
- Pitacco, E., Denuit, M., Haberman, S., and Olivieri, A.(2009), *Modelling Longevity Dynamics for Pensions and Annuity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Retirement Security Project(2008), “Increasing Annuitization in 401(k) Plans with Automatic Trial Income”

- (<http://www.retirementsecurityproject.org>)
- Rocha, R. and Thorburn, C.(2007), “Developing Annuities Markets: The Experience of Chile”, World Bank, Washington, DC
- Rocha, R. and Vittas, D.(April 2010), “Designing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Policy Issues, Constraints and Op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 Rocha, R. and Vittas, D., and Rudolph, H.(April 2010),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2), *The 200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the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The Board of Actuarial Standards(January 2009), Technical Memorandum TM1: Statutory Illustrations of Money Purchase Benefits Version 1.3 (<http://www.frc.org.uk/bas/about/index.cfm>)
- The Pensions Regulator(October 2009), *A review of retirement information for DC members*
- The Principal Financial Group(July 2008), *Sustaining Income Through Retirement: 4 Strategies for Retiring Clients*
- Whitman, D. and Purcell, P.(2006), “Topics in Aging: Income and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in 200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Yoo, K. and Serres, A.(2004),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and the Net Tax Cost Per Unit of Contribution to Tax-Favoured Schem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406, OECD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영국의 Money made clear(<http://www.moneymadeclear.org.uk>)

부 록 : 미국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

연금전환과 관련해서 디폴트옵션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401(k)의 다른 영역에서 디폴트옵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은 인간 행동에 존재하는 타성의 힘을 인지하고 이를 저축을 저해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자동화 프로그램(automatic program)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제도 가입, 기여와 투자가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 단계에 대해 프로그램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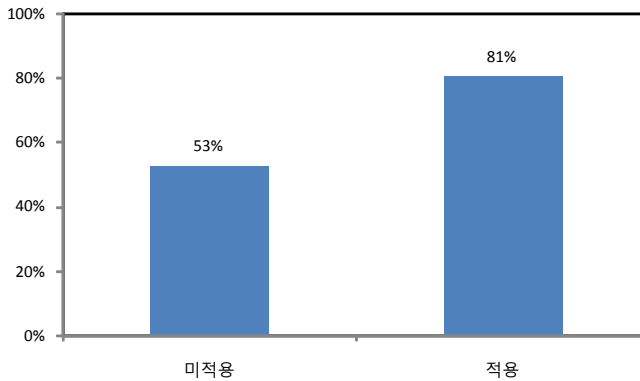
401(k)의 첫 단계인 등록²⁾부터 기여율 수준 결정, 투자 선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적절한 디폴트옵션을 제시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디폴트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401(k)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므로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하려면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제시된 펀드들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가입 절차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가입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 한 특정 기여율 및 자산배분을 요건으로 제도에 가입됨을 알린다.

이러한 디폴트 규칙의 변경을 통해 401(k)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다(Madrian and Shea, 2001; Choi et al., 2006). Fidelity 분석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자동가입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체의 가입률은 53%에 불과한데 비해 자동가입을 실시하는 사업체의 가입률은 81%에 달한다.

1) 이에 대해서는 이경희·최이섭(2010)을 참조하십시오.

2)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임의가입이므로 우리나라의 DC와 달리 근로자가 401(k)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부록 그림-1〉 자동가입 적용 여부에 따른 401(k) 가입률



주 : Fidelity(2007)

자동가입은 가입률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가입자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디폴트 기여율(예: 2%, 3%)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여율을 자동으로 높이는 점진적 저축 증대(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임금 인상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기여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자동투자는 근로자들의 자산배분 관련 전문지식이 높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제공하는 펀드 수를 늘리기보다는 다양한 수준의 위험회피성향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펀드를 제시하였다. 이들 펀드들은 이미 분산투자 기능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면 되고, 일부 펀드들은 가입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부록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자동기여율인상, 자동투자 등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delity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자동가입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66%(=6%+38%+1%+21%)가 자동기여율인상도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63%(=6%+38%+19%)는 자동투자를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가입제를 채택한 사업장 중 자동기여율인상과 자동투자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 27%에서 2006년에는 44%(=6%+38%)로 높아졌다.

〈부록 표-1〉 자동가입제 채택 시 자동기여율인상 및 자동투자 활용도

| 자동가입제도 | 자동기여율인상 | 자동투자 | 비중 |
|--------|---------|------|------|
| Yes | Opt out | Yes | 6% |
| Yes | Opt in | Yes | 38% |
| Yes | None | Yes | 19% |
| Yes | Opt out | No | 1% |
| Yes | Opt in | No | 21% |
| Yes | None | No | 15% |
| 전체 | | | 100% |

자료 : Fidelity (2007)

자동이전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0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규모 적립금이 퇴직자산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퇴직연금제도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IRA 이전이 디폴트옵션으로 설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인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소규모 적립금도 IRA로 자동이전된다. 2005년 3월부터 \$1,000~\$5,000 규모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자동이전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IRA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401(k) 관련 디폴트 옵션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리하면 〈부록 표-2〉와 같다.

401(k) 관련 디폴트옵션 정책은 주로 민간 부문 즉,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채택을 저해하는 제반 장벽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6년 8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을 계기로 디폴트옵션 설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동 제도의 활용이 장려되었다. 자동

가입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는 급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디폴트 투자옵션의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수탁자 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호법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이 주법에 우선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가입을 합법화시켰고, 자동가입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디폴트 투자옵션으로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펀드를 제공할 경우에도 수탁자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연금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9월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추가로 공표함으로써 제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요인들을 해소시켜 주었다.

〈부록 표-2〉 401(k) 관련 디폴트옵션 정책

| 프로그램 | 내용 | 정책 효과 |
|------------------------------------|---|---|
| 자동가입 (automatic enroll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1(k)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시킨 후 탈퇴 여부 선택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기간 내 자동 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시점을 앞당김 가입률 증대 취약 계층 효과 높음 |
| 자동기여율 인상 (automatic escal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인상 시 기여율을 자동으로 높임(4% → 5% → 6%) 가처분소득의 절대금액은 감소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nguard, TIAA-CREF, Fidelity 등 많은 운용사들이 채택 대기업의 37% 정도가 채택 4년 경과 후에도 90% 정도 유지 |
| 자동투자 (automatic invest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옵션을 확대하는 것보다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킨 투자상품을 제시 자사주에 대한 투자 제한 자산배분 변경횟수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프 사이클 펀드, 밸런스형 펀드, 매니지드 어카운트 등 활용 |
| 자동이전 (automatic rollov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IRA로 이전 2005년 3월부터 \$1,000에서 \$5,000까지 규모의 일시금에 대해서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A 활용도가 높아짐 |
| 자동지급방식 (automatic payout) | 논의 중 | 불분명 |

〈부록 그림-2〉 OMO 시스템의 연금전환 조건 예시(1)


[Help & Support](#) | [Media Centre](#) | [Cymraeg](#) | [Contact us](#)
 [f](#) [t](#)

| | | | | | | | |
|--|--------------------------------------|--|--|-----------------------------------|----------------------|--------------------------|---------------------------------|
| Home | Your money | Parents guide to money | Divorce & separation | Comparison tables | News | About us | Working with us |
| Comparison tables home | Help using this site | Useful links | | | | | |

You are here > [Choose a product](#) > [Compare Annuities](#)

Annuities

Compare Annuities

[More about pension funds](#)

So that we can give you the most useful information on annuitie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you won't see](#)

[Compare Annuities](#)

You should know

The products you will see are not recommendations. You should always confirm the product details with the provider or an adviser.

Email us

For queries about this website please e-mail us at tables@moneyadviceservice.org.uk

- Are you
 - Male
 - Female
- At what age do you intend to buy a lifetime annuity?
- What is your full postcode?
- Are you a smoker?
 - Yes
 - No
- How much of your pension fund will you use to buy a lifetime annuity? Please enter the amount after taking off any tax-free lump sum you will take.
- Do you want to see rates for lifetime annuities with a guaranteed term?
 - No guarantee
 - 5-year guarantee
 - 10-year guarantee

주 : 영국의 Money made clear (<http://www.moneymadeclear.org.uk>)

〈부록 그림-3〉 OMO 시스템의 연금전환 조건 예시(2)

Email us

For queries about this website please e-mail us at tables@moneyadvice.service.org.uk

4. Are you a smoker? ?
 Yes No

5. How much of your pension fund will you use to buy a lifetime annuity? Please enter the amount after taking off any tax-free lump sum you will take. ?
 £

6. Do you want to see rates for lifetime annuities with a guaranteed term? ?
 No guarantee 5-year guarantee 10-year guarantee

7. Do you want to see the rates for a lifetime annuity that is: ?
 Single life Joint life


8. What age will your spouse or partner be when you take your annuity? ?
 You don't need to complete this question

9. What level of income do you want your spouse or partner to receive when you die? ?
 You don't need to complete this question

10. How would you like to sort your results? ?

[Show me annuities ▶](#)

Terms and conditions | Privacy Policy | Accessibility | Site map



주 : 영국의 Money made clear (<http://www.moneymadeclear.org.uk>)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역,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1.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장동식, 최영목, 김소연,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 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명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 제공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이 경 희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계리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hlee@kiri.or.kr)

정책보고서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발행일 2011년 5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32-2

정가 10,000원